

디지털사회 법제연구(I) - 가상통화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한정미 · 안수현



디지털사회 법제연구(I)
- 가상통화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
Legal Research for Digital Society(I)
- A Legal Study on the Regulatory System on Virtual Currency -

연 구 자 : 한정미(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Han, Joung-Mee
안수현(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전원 교수)
Ahn, Su-Hyun

2017. 8. 31.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가상통화의 출현

-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은 민간 가상통화(Virtual Currency, Digital Currency, Crypto-currency 등으로 표시되며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이 해당), 금융회사(Citicoin, MUFG Coin 등 개발 중) 디지털화폐의 기반 기술로 활용되며 그 적용범위를 계속 확장

▶ 가상통화의 문제점

- 우리나라도 코빗, 빗썸, 코인테스트 등 비트코인 관련 가상통화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규제 및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 투자사기, 조세회피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
 - 가상통화의 이용 증가(전 세계적으로 약 700개 유통 중)에 따라 해킹 등 불법행위 대가로 가상통화를 요구하거나, 유사 비트코인 발행으로 투자사기를 벌이는 사례도 발생
 -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가상통화를 통한 건전·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

▶ 향후 입법화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한 해외 주요국 감독·규제체계 분석을 통하여 향후 국내 입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

II. 주요 내용

▶ 주요국의 가상통화 관련 규제 등 입법동향

- 미국
 - 미국은 2017년 7월 14~20일 제126차 미국 통일법위원회 연례 컨퍼런스가 개최되었고 이 회의의 주요한 의제 중 하나로 「통일가상통화업규제법(Uniform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y Businesses Act)」이 상정되어 7월 19일 최종 통과되었으며 ‘통일가상통화법’은 미국 모든 주에서 승인되도록 권장
 - 미국의 자금세탁방지기구(FinCEN)에서는 2013년 3월 가상통화 중개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하였으며, 뉴욕주의 경우 2015년 6월 가상통화사업자에 대한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를 의무화
- 영국
 - 영국의 경우 초기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양도가능 한 증서(tradeable voucher)로 분류하였다가 현재는 ‘사적 화폐(private currency)’로 보는 경향
 - 사적 화폐로 취급되는 경우 비트코인을 매매하는 것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비트코인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
 - 영국정부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에 대해 사적 화폐로 보고 법정화폐로 보지 않으며, 증권성도 인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함

- 금융감독기관인 FCA는 현재까지 비트코인 사업자에 대하여 명백한 규제방침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독일
 - 독일의 경우 이미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규율할 수 있는 규제체계가 은행법상 마련
 - 은행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독일 내에서 은행업 또는 상업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영위하려고 하거나 상업적 방식으로 하는 기업을 설립하려는 자는 금융감독청 (BaFin)으로부터 서면으로 허가를 받도록 함
 - BaFin은 비트코인을 금융상품 중 계산단위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는 규정을 마련
- 일본
 - 2016년 5월 ‘자금결제법’에 가상통화 개념을 정의하고, 가상통화교환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입법화가 진행되어 2017년 4월 시행
 - 이 법 시행에 따라 가상화폐교환업은 내각 총리대신에게 등록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최소자본 유지 의무, 부채규제 등이 주요 규제사항에 해당
- 주요국의 대응방식 차이
 - 영국은 즉각적인 입법을 하기 보다는 현행법상 불법적인 거래형태 등에 대해서 면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가상통화 관련 업계의 변화를 주목
 -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해당 사업에 대한 입법체계를 갖추고 사업의 영역으로 접근
 - 독일은 현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가상통화를 규율하는 방식을 채택

▶ 가상통화의 가변성 및 특성

○ 가상통화의 가변성

- 가상통화는 아직 그 형태나 성격면에서 기존의 어떤 산업유형이나 분야에 해당한다고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
- 가상통화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금융기관의 새로운 금융서비스 발굴과 부가가치 창출 노력으로 금융시장에서는 구조변혁과 금융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되고 있기 때문

○ 가상통화의 특성

-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므로 강제 통용성이 없으며, 발행자에 의하여 사용 잔액을 환급 받거나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
- 가상통화는 기존의 법체계로 이해하기에는 매우 곤란한 여러 가지 특성이 존재
- 투자성을 가지고 있어, 가치의 변동이 급격하게 발생하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음
- 따라서 보통의 현금이나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않음
-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사고는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 기관에 예치된 예금 등 자산에 대해서는 예금보호제도 등에 따라 일정 수준까지 보호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가상통화에서는 해킹으로부터의 제도적 보호기제가 없는 상황

▶ 가상통화 입법화 방안에 대한 검토

○ 입법화 방식 검토의 배경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행 법 기준으로 합법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거래유형이나 불법자금세탁에 해당하는 거래유형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입법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의 전자금융거래에 가상통화의 영업형태가 포함될 수 있는가의 문제
 - 외환거래(외환송금)의 기능도 포함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수용하기 위해서는 입법의 목적과 대상을 달리 정해야 할 과제가 있음
- 외국환거래법에 입법하는 방안의 검토
 - 2017년 1월 17일 ‘외국환거래법’의 개정으로 소액해외송금에 대한 등록규정이 마련
 - 가상통화를 통해 외국환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고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가상통화의 영업형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상황
- 자본시장법에 입법하는 방안의 검토
 - 가상통화의 투자성을 기반으로 투자상품의 한 유형으로 분류한다면 현행 ‘자본시장법’에 입법하는 방식도 검토
 - 발행기관의 문제, 거래소의 구분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며, 외환거래의 부분 등 가상통화의 전 영업영역이 포함되지 않는 문제
-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에 입법하는 방안의 검토
 - 현재 가상통화로 영업을 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상황
 - 다만, 이 법의 목적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상통화를 하나의 산업분야, 자금조달 방식으로 입법화하려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은 대상법률임

- 개별 제정법을 마련하는 방안의 검토
 - 현행법상 현재 제시되고 있는 가상통화의 특성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은 없음
 - 가상통화는 기존의 법적인 이해나 개념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이며,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향후 그 형태나 영업방식의 변형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
 -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가상통화에 맞춘 개별법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 이러한 해결방식은 기존의 법체계를 해치지 않고 새로운 분야의 입법을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것이지만, 새로운 분야가 등장할 때마다 현행법을 맞추어 발전시키지 않고 새로이 접근하는 것으로만 해결하려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요소도 있음

Ⅲ. 기대효과

- 가상통화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주요국의 대응 방안 검토를 통하여 시사점을 제시
- 향후 가상통화 제도화에 기초자료로 활용

▶ 주제어 : 가상통화, 비트코인, 블록체인, 가상화폐, 디지털경제, 디지털사회

Abstract

I. Backgrounds and Purposes

▶ The emergence of virtual currency

- Block Chain and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can be used in private virtual currency(Digital Currency, Crypto-currency, etc.). It is used as base technology of virtual currency and its scope of application is expanding.

▶ Problems with virtual currency

- In Korea, transactions through virtual currency exchanges related to bitcoin is increasing. However, there is no supervision or regulation due to lack of grounds for such in current law.
- There is a need for regulations to prevent illegal activities such as investment fraud and tax avoidance.

▶ Developing measures for future legislation

- It is necessary to draw up implications for domestic legislation in the future by analyzing the regulatory systems of leading countries.

II. Major Content

- ▶ **Legislative trends such as regulations on virtual currencies of major countries**
 - United States
 - In the United States, the 126th Annu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 Uniform Law Committee was held on July 14-20, 2017. One of the main agenda of the meeting was the "Uniform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y Businesses Act". This Act was finally passed on July 19.
 - The "Uniform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y Businesses Act" is recommended to be approved in all states in the United States.
 - FinCEN in the US imposed anti-money laundering obligations on virtual currency brokers in March 2013 and mandated BitLicense for virtual currency business operators in New York State in June 2015.
 - United Kingdom
 -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considers virtual currencies, such as bitcoins, not as statutory currencies but as private currencies whose securities are not recognized.
 - FCA, the financial supervisory institution, has not yet established clear regulatory policies on bitcoin business operators.
 - Germany
 - In the case of Germany, the regulatory system for virtual currency like the bitcoin is provided by the "Banking Act".

- Article 32 (1) of the German “Banking Act” states that "anyone wishing to conduct banking business or to provide financial services in Germany commercially or on a scale which requires a commercially organised business undertaking requires a written licence from the Federal Banking Supervisory Office (BaFin).

- Japan

- In May 2016, Japan defined the concept of virtual currency in the "Funds Payment Act" and legislated relevant regulations, such as mandatory registration of virtual currency exchange business, which came into force in April 2017.

- With the enforcement of this law, the virtual money exchange business is required to register with the Prime Minister, and the minimum capital maintenance obligation and liability regulations are subject to regulation.

▶ Different responses of major countries

- UK, rather than making immediate legislation, enforces regulation of illegal forms of transactions in current law, while paying attention to changes in the virtual currency industry.

- US and Japan approaches virtual currency industry with a new legislative framework.

- Germany adopts a method to regulate virtual currency through revision of existing law.

▶ Variability and characteristics of virtual currency

- Variability of virtual currency

- It is yet difficult to categorize virtual currency with existing types of industry or sector.
- It is because structural change is taking place along with emergence of new financial risks due to financial institutions' effort to develop financial services and create added value using Block Chain, which is the core technology of virtual currency.
- Characteristics of virtual currencies
 - The virtual currencies are not a statutory currency and therefore cannot be forcibly circulated and are not refunded by the issuer or exchanged for cash or deposits.
 - Virtual currencies have many characteristics that are difficult to understand in the existing legal system.
 - Virtual currencies are exposed to the danger of hacking.

▶ Review of virtual currency legislation

- Background for reviewing process of virtual currency legislation
 - In Korea, legitimate transactions should be allowed under the current law, but active countermeasures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types of transactions that correspond to similar receipt activities or types of transactions corresponding to illegal money laundering.
- Methods to legislate with existing laws, such as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Capital Market Law”, “Act on the Regulation of Similar Reception Act” are reviewed.

- There is no statute in the current law in which the characteristics of the virtual currencies are applicable.
- Virtual currencies are difficult to approach with existing legal definitions or concepts, intangible, and difficult to predict how related industries will change in terms of form or mode of business.
- Considering these issu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ays to prepare individual laws tailored to virtual currencies.

III. Expected Effects

- This research examines the problems of virtual currencies and presents implications from responses of major countries.
 - This research may be use as a reference material for legal framework for virtual currency in the future.
- ▶ **Keyword: Virtual currency, bit coin, block chain, virtual currency, digital economy, bitcoin**

요약문	3
Abstract	9

제1장 서론 /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1. 연구의 필요성	21
2.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4
1. 연구 방법	24
2. 연구 범위	24

제2장 가상통화 관련 현황 / 25

제1절 가상통화 이용현황	27
제2절 가상통화 관련 문제점 검토	28
1.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28
2. 가상통화에 대한 세금문제	29
3. 불법자금모집, 사기대출유인 등	30

제3장 주요국의 가상통화 관련 규제체계 현황 / 33

제1절 E U	35
1. 규제배경과 특징	35

2. 규제내용	36
제2절 영 국	37
1. 규제배경과 특징	37
2. 규제 현황	45
3. 규제기관	49
4. 규제내용	51
5. 향후 예상	56
제3절 독 일	60
1. 규제배경 및 특징	60
2. 규제근거	64
3. 규제기관	69
4. 규제내용	73
5. 향후 예상	78
제4절 미 국	79
1. 배경 및 특징	79
2. 규제기관	81
3. 규제내용	81
4. 향후 예상	88
제5절 일 본	89
1. 규제 배경 및 특징	89
2. 규제기관	90
3. 규제내용	90
4. 향후 예상	94
제6절 소 결	95

제4장 가상통화 제도화를 위한 법정정책적 시사점 / 97

1. 가상통화의 개념설정	99
2. 가상통화 관련 입법 방향	106
참고문헌	113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분산원장기술,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이 금융에 도입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지급결제 수단의 등장으로 “현금 없는 사회” 실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발전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을 등장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실제 지급결제 수단 및 유망한 투자수단, 또는 이를 넘어서 투기수단으로까지 사용되고 있는 가상통화가 출현하여 금융시장에서의 법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은 민간 가상통화(Virtual Currency, Digital Currency, Cryptocurrency 등으로 표시되며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이 해당), 금융회사(Citico인, MUFG Coin 등 개발 중) 디지털화폐의 기반 기술로 활용되며 그 적용범위를 계속 확장시키고 있다.

가상통화 출현에 따른 국내 정책대응 현황을 보면, 가상통화 출현 및 이용증가에 따른 정책당국의 다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금융위원회는 ‘디지털화폐 TF’ 구성·운영(‘16.11.17) 하고 있으며, ‘2단계 핀테크 발전방안’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에 대한 규율근거 및 거래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계획 발표(‘17년 업무계획 브리핑)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 발행 TF’ 운영 및 모의실험 추진, ‘동전 없는 사회’ 추진(선불카드, 계좌송금, 전자화폐 등 시범사업 실시)하며 ‘디지털통화 제도화 TF’ 참여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주요국의 금융당국에서도 가상통화가 향후 지급결제 시스템의 하나로 활용되거나, 그밖에 다양한 형태의 금융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게 될 내용과 같이 즉각적인 입법을 보인 국가가 있는 반면, 현행 법제를 통한 대응 체제를 갖추려는 국가도 나타나고 있다.

2009년 비트코인 등장 이후 다수의 가상통화가 출현하고 거래가 늘어나면서 미국, 일본에서는 신속히 감독규제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미국의 자금세탁방지기구(FinCEN)에서는 2013년 3월 가상통화 중개업자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 부과하였으며, 뉴욕주의 경우 2015년 6월 가상통화사업자에 대한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를 의무화하였다.

영국은 디지털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제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새로운 규제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독일은 2013년 ‘은행법’에 있는 금융상품의 개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정하여 비트코인을 금융자산으로 규정하고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2016년 5월 ‘자금결제법’에 가상통화 개념을 정의하고, 가상통화 교환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입법화가 진행되었으며, 2017년 시행 예정이다.

EU는 2016년 5월 디지털화폐 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TF 구성 결의안을 EU집행위 제출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며,¹⁾ 2015년 10월 유럽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은 디지털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https://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1542 (2017. 11. 14. 최종방문)

통화가 법정통화는 아니지만 일종의 화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²⁾

이와 같이 가상통화 이용 증가에 따른 법제 정비의 필요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가상통화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금융기관의 새로운 금융서비스 발굴과 부가가치 창출 노력으로 금융시장에서는 구조변혁과 금융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코빗, 빗썸, 코인테스트 등 비트코인 관련 가상통화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규제 및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가상통화의 이용 증가(전 세계적으로 약 700개 유통 중)에 따라 해킹 등 불법행위 대가로 가상통화를 요구하거나, 유사 비트코인 발행으로 투자사기를 벌이는 사례도 발생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가상통화를 통한 건전·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한 해외 주요국 감독규제체계 분석을 통하여 향후 국내 입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이 보고서는 가상통화 관련 이용 현황 및 법적인 쟁점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주요국의 가상통화 관련 법제 정비 내용 분석 및 비교 검토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가상통화 제도화를 위한 시사점과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https://www.cryptocoinsnews.com/eus-top-court-rules-bitcoin-currency-trades-exempt-vat/> (2017. 11. 14. 최종방문)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 연구 방법

다양한 조사대상 국가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금융분야 전문가를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유기적인 연구협업이 이루어지도록 연구를 수행한다.

분담 부분	작성자
서론	한정미
가상통화 관련 현황	한정미
주요국의 가상통화 관련 규제체계 현황 - EU, 영국, 독일 - 미국, 일본	안수현 한정미
결론 : 가상통화 제도화를 위한 법정정책적 시사점	한정미, 안수현

쟁점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워크숍 개최 및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자문회의 개최하여 연구결과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2. 연구 범위

가상통화의 규제체계 연구를 위하여 조사 대상 국가는 가상통화에 대한 입법적 조치들이 등장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EU 내의 독일과 EU를 벗어난 영국으로 선정하여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입법내용이나 입법 관련 정책을 분석하도록 한다.

조사의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가상화폐에 대한 통화 개념 부여 여부에 따라 규제의 수준이나 조세제도의 적용방식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므로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법적 성격이나 법적 정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조사하도록 한다.

또한, 주요국의 가상통화 관련 구체적인 조사 내용으로는 집중적인 연구수행과 우리나라의 가상통화 제도화 논의에 기여하고자 규제근거 및 입법논의의 전개방향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한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2장

가상통화 관련 현황

제1절 가상통화 이용현황

제2절 가상통화 관련 문제점 검토

제2장

가상통화 관련 현황

제1절 가상통화 이용현황

가상통화는 비트코인 이외에도 이더리움(Ethereum), 리플(Ripple) 등이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가상통화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상통화는 새로운 투자 대안, 유망한 투자처로 투자자에게 홍보, 인식되면서 급속한 성장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사용자가 2017년 6월 한 달 간 신규 가입자가 100만 명의 늘었으며, 지난 18개월 동안 약 400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했다.³⁾

독일에서는 휴대폰에서 가상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용되는 등⁴⁾ 가상화폐의 사용방법이나 사용자의 층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 가상화폐와 현금을 교환하는 거래소는 7곳이며, 이 중 6개의 거래소는 모두 일본 내에 본사를 두고 있고, 일본 내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비트코인 거래규모는 2016년 5월 기준으로 1800억 엔으로 전년대비 25배로 확대되고 있다.⁵⁾

그러나 비트코인은 공식적으로 가격이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2010년 8월 20일의 6센트와 비교하면 7년여 만에 값이 4만 배 이상 상승하였다는 계산이 되며, 이후의 화폐로서의

3)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13683#csidxc398896f6be611b8b1d014d9e84a89b> 이투데이 기사 참조(2017. 7. 13 최종접속).

4)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13683#csidxc398896f6be611b8b1d014d9e84a89b> 이투데이 기사 참조(2017. 7. 13 최종접속).

5) “자금결제법 개정안과 가상통화(디지털통화) 이용현황”, 주간금융브리프 제25권 29호, 2016. 7. 23, 20쪽.

가치 평가에 대해서도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투자자산으로서의 가격상승 기대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분석이 있다.⁶⁾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에서 제도화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⁷⁾

비트코인 거래소는 비트코인 구매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는 곳으로 원, 달러, 유로, 위안, 엔 등 법정통화와의 교환비율이 정해지게 되는데 1BTC(비트코인) 가격이 2017년 4월 현재 1,342,793원⁸⁾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거래량 면에서도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중 거래규모가 큰 상위 3개사의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중 거래량은 약 1조 5,064억 원으로, 2015년 대비 2016년 월평균 거래량이 약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⁹⁾

제2절 가상통화 관련 문제점 검토

가상통화는 높은 투자수익률과 수수료 없는 외국환 거래, 집중된 중앙서버가 없는 운용 형태로 인한 해킹에서의 안전성 등 일부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가상통화는 기본적으로 기존 금융제도에 속하지 않고 있어, 정부의 규제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유형만 제시해 본다.

1.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가상통화의 익명성을 바탕으로 자금세탁, 탈세, 마약·무기밀매 등 불법거래에 악용하거나,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점을 노려 유사수신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6) <http://naver.me/FFkqoJcV> 매일경제 기사 참조(2017. 7. 14 최종접속).

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 11. 17), 2면. https://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 S0030&no=31542(2017. 11. 14. 최종방문)

8) 우리나라에는 코빗(www.korbit.co.kr)을 비롯하여 빗썸(www.bithumb.com) 등 다수의 거래소 존재하며, 해외에는 Coinbase(美), BTC China(中), bitcoin.de(獨), BTCBOX(日)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 4. 14), 5면.

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 11. 17), 2면. https://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 S0030&no=31542 (2017. 11. 14. 최종방문)

있다.¹⁰⁾ 그 밖에도 해킹 등 불법행위의 대가로 디지털통화를 요구하거나 유사 디지털통화 투자로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현혹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¹¹⁾

가상통화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있어서 본인확인 절차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며,¹²⁾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직접 거래방식도 사용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세탁의 방법으로 가상통화가 사용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2017년 6월 ‘노아코인’ 등 사기코인이 등장하여 신종사기 수법의 하나로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¹³⁾

이와 같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안심하고 비트코인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가 요구되었고, 비트코인을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 자금결제법」에 의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 교환 사업자를 「범죄에 의한 수익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에 따라 특정 사업자로서 거래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본인 확인) 할 의무를 부과하였다.¹⁴⁾

2. 가상통화에 대한 세금문제

가상통화에 대한 세금부과 문제는 위의 자금세탁을 하는 이유에 조세회피를 위한 경우가 많다는 점과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 가상통화 관련 영업을 하는 거래소에 관련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1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https://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1542

1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 11. 17), 3면. https://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1542 (2017. 11. 14. 최종방문)

12) 비트코인 등을 가상계좌를 통해 입수하여 ‘다크월렛’이나 ‘텀블러’로 불리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거래를 섞는 방식으로 금융당국의 계좌추적을 피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http://m.etoday.co.kr/view.php?idxno=1511309&ref=https%3A%2F%2Fwww.google.com%2F#cb> 이투데이 기사참조 (2017. 7. 14 최종방문)

13) <http://m.etoday.co.kr/view.php?idxno=1511309&ref=https%3A%2F%2Fwww.google.com%2F#cb> 이투데이 기사참조(2017. 7. 14 최종방문).

14) 「범죄에 의한 수익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 제4조(거래시 확인 등) 조문의 내용 참조.

이와 관련하여 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의 2015년 ‘가상통화와 법정통화를 교환하는 거래소에 등록면허제를 부과’하는 지침내용을 추가한 바 있으며, 일본은 비트코인 거래에 관한 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세는 폐지하는 한편, 소득세는 유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세청은 가상화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서면부가-21616, 2015.12.29)을 한 바 있다.¹⁵⁾

3. 불법자금모집, 사기대출유인 등

공인된 가상화폐인 것처럼 가장하며 자금을 모집하거나 코인(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불법자금모집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¹⁶⁾ 코인의 가격이 급등하여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100% 환전이 가능하다고 제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사기대출 유인의 문제도 나타나고 있는데, 고금리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수요자(피해자)에게 햇살론 등 정부정책상품으로 대환대출을 안내해 주는 것¹⁷⁾으로 유인하여 수수료 명목의 비트코인을 갈취하는 소비자 피해 등도 나타나고 있다.

그 밖에도 가상통화 관련 프로젝트를 인터넷 상에 게시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가 등장하여 증권규제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을 모집하는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¹⁸⁾ ICO를 이용한 자금조달은 그 자금모집의 형태가 기존의 증권규

15) 정경영·백명훈, “디지털사회 법제연구(II) -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 관련 법제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2017. 8. 31, 101쪽.

16)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5. 11. 6) 참조. <http://m.fss.or.kr:8000/fss/board/bodoBoardDetail.do?seqNo=18952&page=2&mid=M01050201000000&gubun=01> (2017. 11. 14. 최종방문)

17)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 4. 14), 2쪽.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bs_view.jsp?seqno=20418&no=18&s_title=&s_kind=title&page=1 (2017. 11. 14. 최종방문)

18) 천창민, “ICO(Initial Coin Offering)의 증권법적 평가와 함의”, 자본시장포커스, 자본시장연구원, 2017. 9. 5, 1쪽.

제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경우에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싱가포르 금융당국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 또는 채무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면서¹⁹⁾ 규제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와 같은 새로운 투자유형의 등장은 규제가 없거나 적은 투자방식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으며, 실제 단기간에 투기자본이 집중되고, 기존 증권규제 관련 법령상의 투자자 보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등 투자자 피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19) 천창민, 위의 자료, 2쪽.

제3장 주요국의 가상통화 관련 규제체계 현황

제1절 E U

제2절 영 국

제3절 독 일

제4절 미 국

제5절 일 본

제6절 소 결

제3장

주요국의 가상통화 관련 규제체계 현황

제1절 EU

1. 규제배경과 특징

가상화폐는 현재 EU의 E-Money Directive상의 전자화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동 지침은 E-money에 대하여 전자적으로(마그네틱 포함) 금전적 가치가 저장되어 발행자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표창하는 것으로 결제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²⁰⁾.

따라서 전자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금을 받은 다음에 전자화폐가 발행되어야 하므로 발행인이 임의로 전자화폐 발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은 암호통화와 배치된다. 왜냐하면 암호통화는 발행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알고리즘이 새로운 암호단위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암호통화에 대하여 EU 전자화폐지침에서는 포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3차 전자화폐지침(EMD3) 개정이 진행 중에 있어 추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되고 있다.

20) 해당 원문을 보면 “electronically, including magnetically, stored monetary value as represented by a claim on the issuer which is issued on receipt of funds of the purpose of making payment transactions and which is accepted by a natural or legal person other than the electronic money issuer”로 표시된다. HM Treasury, Laying of Regulations to implement the new E-Money Directive- a consultation document, October 2010, at.9

2. 규제내용

EU에서는²¹⁾ 현재 PSD2 지급결제서비스업자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추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²²⁾ 동 지침이 적용되는 것은 대가관계인 자금(funds)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데, 이는 현재 현금, 은행계좌금액, 전자화폐(e-money)만 해당하는 것으로 암호통화는 이들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동 지침은 지급결제서비스업자에 대해서만 주목할 뿐 결제수단의 발행인에 대해서는 주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개정시 funds, payment transaction, payment institution 등 정의규정부터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비트코인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에 대해서도 MiFID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트코인 거래소의 경우 거래소에 대한 규제체계 중 MTFs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MTFs는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인데 비해 비트코인은 화폐도, 상품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2015년 5월 시행된 4AMLD(Directive 2015/849)에 서는 “익명의 e-money instruments”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21) EU의 규제방식에 대한 비판으로는 The Evolution of Third Party Payment Providers and Cryptocurrencies under the EU's Upcoming PSD2 and AMLD4, Swift Institute Working Paper No. 2015-001, 23 September 2015.

22) EU 위원회는 지급결제서비스지침에 암호통화 취급업자를 포함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음.

제2절 영국

1. 규제배경과 특징

(1) 비트코인에 대한 신중한 태도(Regulatory Wait and See Approach)

영국에서 비트코인을 둘러싼 규제태도를 단적으로 말하면 현재까지는 손을 놓고 있는 상태(hands off approach)고 할 수 있다. 이는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변화속도와 결과를 현재로서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다려 보고 상황에 맞게 하겠다는 것(wait and see approach)으로 이해된다.

(2) 탄력적인 규제기법 고안

최근 급변하는 기술변화로 인하여 금융시장을 규율해왔던 법제와 규제패러다임은 종래와는 다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규제와 감독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기관도 인지하고 규제기관의 규제프로세스에 기술의 변화를 반영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경우 금융감독기관인 금융감독청(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블록체인과 이에 기초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를 대표적인 Project Innovate에 속하는 분야로 보고 있다.

“Project Innovate”란 FCA가 2015년에 발표한 정책으로²³⁾ 일종의 파일럿 규제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은 현재까지 매우 적극적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새로 출현하는 신금융서비스가 어떠한 금융규제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 및 검토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 금융규제 중 조정가능사항을 파악하여 사업자에게 자문해 주거나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것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사전에 조정하는 등(예컨

23) FCA, Regulatory Sandbox, (<https://www.fca.org.uk/firms/fintech-and-innovative-businesses>). 08/08/2017방문

대 regulatory sandbox가 대표적인) 종합적인 혁신지원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혁신을 고취한다는 데 있다.²⁴⁾ 또한 파괴적인 혁신을 통해 경쟁을 촉진시키고자 하기 위함이다. 즉 고객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의 사업모델에 도전하는 혁신을 말한다.²⁵⁾ 현재 Project Innovate에 따라 FCA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 경쟁촉진정책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Project Innovate에서 제시한 5가지 경쟁촉진정책

유형	내용
Regulatory sandbox	- 혁신적인 금융상품·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하여 사업자에 대하여 현행법을 즉시 적용하지 않고 안전한 테스트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혁신을 촉진
Themed weeks	- 혁신의 발전과 경향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FCA와 관계자간의 관계 강화목적으로 마련
RegTech	- 사업자가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이용에 있어 저렴하고 단순하게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이 목적
The Cloud	- 사업자가 규제를 준수하면서 클라우드에 정보를 아웃소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침을 제시 - 혁신적인 사업자가 기대하는 효율적이고 비용대비 효과가 큰 비즈니스모델이 가능하도록 많은 사업자가 제기하는 우려에 신속하게 대처
Call for Input on Barriers to Digital and Mobile Solutions	- 금융서비스를 위한 디지털·모바일솔루션의 혁신을 제한하거나 혹은 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되어야 하는 특정 규정 내지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출처: 原島研司, 英国のRegulatory sandbox, みずほ総合研究所, 2016.3.31

24) FCA, Regulatory Sandbox, (<https://www.fca.org.uk/firms/fintech-and-innovative-businesses>). 08/08/2017방문

25) Anna Wallace, Project Innovate, FCA, (http://www.meti.go.jp/committee/kenkyukai/sansei/fintech/pdf/006_02_00.pdf)

무엇보다 FCA는 Regulatory sandbox²⁶⁾라는 규제기법을 고안하여 혁신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모델이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탄력적인 진입규제방식을 고안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탄력적인 규제기법은 2015년 12월에 발표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 내지 비즈니스모델을 갖고 실제 시장에서 실제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한편으로 이러한 비즈니스가 적정한지 테스트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테스트에는 기존에 인·허가 받은 회사 외에도 미인가·미허가 회사들도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참여의 전제조건으로서 적절한 금융소비자보호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015년 시행시 처음 신청한 사업자들은 총 69개사였는데 이중 18개 기업이 감독기관으로부터 테스트의 시행을 승인받았다. 이후 2016년에 2번째 regulatory sandbox 참여를 신청 받았는데, 총 77개 기업이 신청하였고 이중 31개 기업이 적격요건을 충족하여 순차적으로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테스트를 하고 있다. 신청기업들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분산원장기술과 인공지능을 도입한 상품과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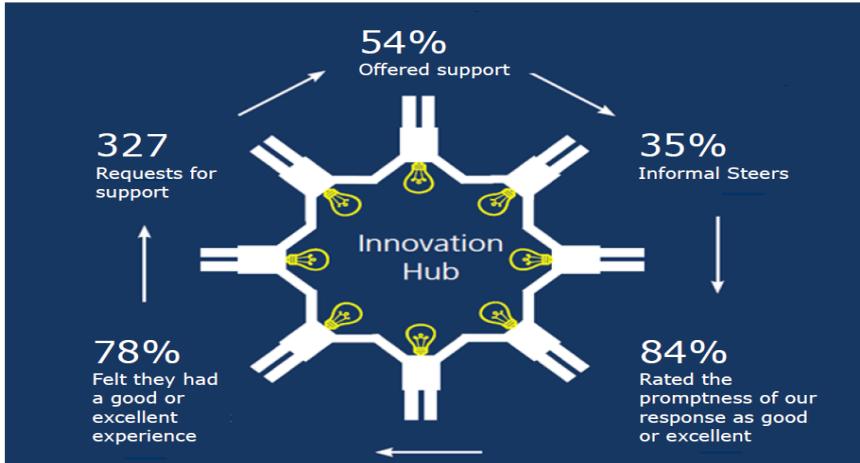
한편, Regulatory sandbox의 방식으로 FCA가 생각한 규제 및 감독기법에는 제한적 인가 부여, no action letters의 이용, 적용면제(waivers)와 개별 지도(individual guidance) 제공 등이 포함된다. “제한적 인가”란 사업자가 일정한 제한하에서 사업아이디어를 테스트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그 외의 사업은 할 수가 없다. 이후 통상의 인가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사업자는 자신의 판단으로 그러한 제한을 풀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다시 인가를 신청할 필요는 없다. 그 외 FCA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 및 이들 사업자에게 아웃소싱을 제공하는 기술사업자에 대해서는 no action letter, individual guidance, waivers와 같은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no action letter는 FCA의 조건을 위반하지 않고 regulatory sandbox의 목적을 해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납득할

26) UK. Takes Novel Approach on FinTech, Wall Street Journal, 11 April 2016;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Consultation Paper: 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 2016.

수 있도록 테스트를 거칠 경우 FCA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사전에 약속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소비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반면, waivers는 테스트하는 것이 FCA의 규제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활동이 ‘금융서비스시장법(FSMA)’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하고 FCA의 규제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을 FCA의 권한으로 적용제외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FCA는 regulatory sandbox에 참가하고 있는 사업자를 위하여 개별 규제를 적용하는 데서 제외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²⁷⁾

이외에 영국정부는 혁신센터(Innovation Hub)를 설치하여 기술혁신기업이 규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하면서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혁신기술기업을 지원하고 핀테크 생태시스템에 함께 참여하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혁신을 뒷받침하는 규제정책과 절차를 고안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다만 스타트업들이 혁신센터의 직접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에는 진정으로 혁신적이어야 할 것, 혁신이 장래 소비자에게 직접 내지 경쟁을 통해서 혜택을 제공할 것, 그리고 혁신사업가는 이러한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 및 연구가 이루어져 있을 것, 아울러 직접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입증할 것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혁신센터를 통해 금융감독기관이 제공하는 직접적 지원의 유형에는 조언,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사전 확인(clarification), 비공적인 조언(Informal steers), 관련 부서와의 미팅 등이 해당된다. 참고로 혁신센터를 통해 직접적 지원이 제공된 비중은 다음과 같다.

27) 다만 이러한 조치를 한다 해도 EU지침에서 정한 조건에는 부합하여야 하며, FSMA에서 정한 규정을 받지 않는 사업자(예컨대 송금업자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출처: Anna Wallace, Project Innovate, UK FCA

종합적으로 볼 때 이러한 영국 금융감독기관의 노력은 신기술에 상응하는 효율적인 규제 및 감독을 하기 위한 감독상의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²⁸⁾

블록체인과 가상통화분야 역시 정부의 핀테크차원에서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분야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는 2014년 8월 6일 재무성이 영국을 디지털 화폐의 중심지로 선도하겠다고 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조사를 하겠다고 발표²⁹⁾한 이후 지속적으로 고수해 온 태도이기도 하다.

(3) 비트코인 관련 규제감독기관의 태도

그러나 한편으로 영국정부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이점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내재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에 기초하여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정도와 범위를 결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즉 영국정부는 가상화폐의 이점과 위험을 인식하면서 아울러 가상화폐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2014년 가상화폐에 대한 이해관계자

28) 이러한 허브를 통해 IT기업들과의 대면접촉이 빈번해지고 규정에 관한 상담과 답변 등 의사소통이 원활해지면서 감독기관 역시 새로운 기술에 대면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그 위험과 대처방법을 조기에 알 수 있기 때문이다.

29) George Osborne hopes to turn Britain into bitcoin capital, 6 August 2014,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4/aug/06/george-osborne-britain-bitcoin-capital>)

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범위를 결정하고자 하였다.³⁰⁾ 이 당시 가상화폐업자, 개발자,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자, 은행, 지급결제시스템회사, 학계, 컨설턴트,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그러한 이유는 비록 현재 형태의 가상화폐가 널리 사용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가상화폐가 기초하고 있는 분산원장이라는 기술은 지급결제기술에 있어 매우 혁신적이고 장래 상당히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비즈니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특히 분산원장기술은 다양하게 금융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예컨대 증권발행의 기록과 양도 등 뿐 아니라 그 외에도 정기적으로 신원을 확인하거나 인증하는 데에도 유용하다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여권, 운전면허, 범죄기록, 부동산등기, 전자투표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분산원장기술은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에도 이용될 수 있어 향후 보다 효과적으로 자산거래 및 대출상환 등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영국정부는 가상화폐기술이 서민금융과 국경 간 거래에 상당한 이점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때문에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지원은 금융감독기관 외에 도 중앙은행의 FinTech accelerating program을 통해 대폭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가상화폐의 불법적인 활용에 따른 위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즉 영국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법을 통해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³¹⁾ 그러면서도 영국 정부(재무성)는 암호통화에 대해 브렉시트 이후 과도한 규제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면서 비트코인 거래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자금세탁방지법을 적용할 계획임을 시사하였다.

한편, 비트코인업자들은 지속적으로 금융감독청인 FCA에 대해 가상화폐관련업의 영위와 관련한 규정이나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FCA는 자금세탁방지법상의 조치 외에는 별다른 코멘트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0%가 넘는 응답자들이 반드시 어떠한 형태 등 가상화폐에 대하여

30) HM Treasury, Digital Currencies: Response to the Call for Information, March 2015, p.3

31) Id. at 4

규제를 하여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³²⁾ 이는 규제상의 태도가 명확해질 경우 산업에 더 유리하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이해관계자들은 가상화폐가 범 죄에 이용되는 것에 대한 방안으로서 고객확인제도(know your customer)와 같은 것이 가상화폐에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은행 및 지급결제기관들 역시 자금세탁 방지법상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³³⁾ 그밖에 설문에 응답한 자들은 규제를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에 대해 가상화폐거래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와 가상화폐 ATM 설치자에 대해서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응답자중 이러한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FCA는 비트코인이 가져올 혁신을 고려하여 자금세탁방지법 외에는 명시적으로 규제를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영국이 국제적으로 금융허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관철하는 차원에서 일관된 태도라고 일응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0%가 넘는 응답자들이 비트코인 관련 지침의 제공과 교육이 가상화폐관련 기술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를 높일 것이라고 답한 것도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의 다른 부처 관계자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가상화폐기술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은행과 영국중앙은행이 이들 가상화폐관련 기술을 기존 지급결제시스템과 결합하여 디지털 sterling을 발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³⁴⁾

아울러 FCA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차원의 규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영국 표준 협회(BSI,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와 가상화폐산업 등과 협업하여 자율적으로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강제규범보다는 업계 자율규율 준수에 포커스를 두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배경에는 가상화폐관련 기술이 갖고 있는 잠재적 이점과 가상화폐의 사용비중이 그리 높지 않고 가상화폐산업이 초기 성장단계에 있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2) Id. at 9

33) Id. at 9

34) Id. at 9

한편, 금융소비자의 피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들이 가능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적어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가상화폐거래소와 전자지갑서비스운영자 등 가상화폐를 예치하고 고객의 자금을 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다만 규제수준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결제기관에 적용되는 수준(기술안전성 확보, 사이버안전 담보, 행위규제, 건전성규제, 손해배상기금의 적용 등)의 규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속적으로 영국에서 지금처럼 정부의 조치가 지속적으로 없는 경우 가상화폐사업에 대한 신뢰 저하로 산업의 성장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다양하게 제안되는 경향이 있다. 그중의 하나가 자율규제를 이용하는 방안이다. 즉 자율규제를 활용할 경우 이들 산업에 진입하려는 창업비즈니스에 준수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개선하는 이점을 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현재 공식적인 금융감독기관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자체 규율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비트코인 관련 인프라측면에서도 지원이 없지 않는데, 대표적으로 연구위원회 Alan Turing Institute-Digital Catapult가 산업과 함께 가상화폐기술을 연구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연구기금을 조성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요컨대 비트코인과 관련한 영국의 규제상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면 영국정부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점이다. 즉 혁신과 위험사이의 균형을 고려하되 현재 국제적으로 주지된 자금세탁법상의 규제를 반영하는 수준에 그치며 필요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규제대상을 제한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보다 혁신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규제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는 그간 영국이 걸어 온 금융중심지로서의 지위 고수라는 패러다임을 고려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규제철학하에 영국정부가 취하는 규제 접근방법을 포함하여 규제현황, 규제기관, 규제내용 등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2. 규제 현황

우선 비트코인을 규제하려면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 초기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양도가능한 증서(tradeable voucher)로 분류하였다가 현재는 ‘사적 화폐(private currency)’로 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과세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이해된다. 즉 양도가능한 증서(tradeable voucher)로 취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반면, 사적 화폐로 취급되는 경우 bitcoin을 사고 파는 것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bitcoin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처럼 영국정부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에 대해 사적 화폐로 보고 법정화폐로 보지 않으며, 증권성도 인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더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국의 금융감독기관인 FCA는 현재까지 비트코인 사업자에 대하여 명백한 규제방침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그러한 점에서 독일의 금융감독기관인 BaFin이 2013년에 비트코인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제방침을 발표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영국 내에서 비트코인 사업자들이 규제 없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즉 비트코인업자들은 스스로 자율규제수준에서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준수해야 할 요건들을 준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한 이유에는 향후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를 겸하면서 더 강력한 규제가 행해지는 것에 대한 예방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체적인 자율규제로는 규제부담과 불명확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 사업자들은 금융감독청인 FCA에 대하여 보다 조기에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FCA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Regulatory Sandbox를 통해 통과한 업자에 한해서만 규제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³⁵⁾ 종래 핀테크 신사업에 대하여 정부의 위탁을 받은 연구보고서에서는³⁶⁾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하고, 상세감독을 하는 등의 pilot 시범기간을 두어 실제 소비자를 상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범방안으로 운용하도록 제안한 바 있다.³⁷⁾

FCA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재무부와 협의하고 그 실행방안의 하나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정책은 핀테크 창업기업들의 신규 진입 촉진과 금융서비스 경쟁의 촉진을 위하여 2015년 11월에 도입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데, 핀테크의 급속한 발전에 부응하면서 기존의 금융규제의 틀을 재정비하는 방법으로서 이용되고 있다. 즉 규제샌드박스에서 실험하는 것을 승인받은 핀테크 기업은 정해진 테스트베드안에서 자신의 사업모델인 상품과 서비스를 실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지만 통상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 경우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미리 한정된 업무와 고객범위 내에서만 비즈니스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Regulatory Sandbox는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시범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받는 것으로 10주간 행해진다. 그리고 이 기간이 종료하면 2단계 테스트를 거치게 되는데, 2단계테스트기간은 6개월이 소요된다.³⁸⁾

1차 Regulatory Sandbox에 포함된 업자 중 3개 업자가 블록체임을 이용한 송금업자로 나타나고 있으며(예: Billon, BitX, Epiphyte)³⁹⁾ 갈수록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비즈니스가

35) Dan Cummings, FCA Testing Blockchain Technology in Pilot Program, Feb 17, 2017.

36) Government Chief Scientific Advisor, Fin Tech Futures, The UK as a World Leader in Financial Technologies,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 2015.

37) Government Chief Scientific Advisor, Fin Tech Futures, The UK as a World Leader in Financial Technologies,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 2015.

38) 2016년 5월 첫 번째 시험테스트집단이 선정, 총 69개 사업자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9) 영국의 지급결제서비스법에 의하면 지급결제서비스업의 취급범위에 따라 초기자본금에 차이가 있다. 예컨대 송금업자의 경우 초기자본금은 €20,000이고, 디지털, IT장치를 이용하여 지급거래를 실행하는 업의 경우 초기자본금은 €50,000인 반면 다른 서비스들도 함께 하는 지급결제서비스업자의 경우 초기자본금은 €125,000

regulatory sandbox를 신청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⁴⁰⁾ 대표적으로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은행과 연계한 고객조사의무를 수행하는 사업자(Tradle)와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지급결제를 하려는 사업자(SETL),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지털 플랫폼제공회사(Nivaura), 블록체인에 기초한 소프트웨어로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Epiphyte),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금을 이체하는데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전자머니플랫폼(Billion), 비트코인 전자지갑과 거래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Luno), 블록체인에 기초하여 긴급시 현금 대신 비상금을 제공하는 기술회사(DISC Holding사), 블록체인으로 주식소유분을 관리하고 장부에 기록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Otonomos), 기타 전자송금업자로서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회사(Tramonex)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갈수록 비트코인업자들은 FCA가 시행하고 있는 Regulatory Sandbox에서 안전성 여부 등을 테스트 받으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처럼 regulatory sandbox만 보더라도 블록체인기술관련 회사가 많이 참여하고 있고 이에 대해 참여를 FCA가 허용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FCA는 블록체인 및 비트코인업자가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 전통적인 금융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했던 규제부담을 줄이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금융규제영역에서 자금세탁방지법의 적용측면에서는 면제받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⁴¹⁾ 다만 자금세탁목적 이 아닌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자금세탁방지법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대상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는 한편 혁신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이해된다.

이 요구된다. 가상화폐로 송급하는 서비스의 경우 regulatory sandbox를 통과하여 송금업으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0) 최근 포함된 사업자로는 BlockEx, Disberse, Nivaura, Nuggets, OKLink, Oracilze, Paylinko, Sabstone, ZipZap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41) HM Treasury, Digital Currencies: Response to the Call for Information, March 2015, p. 19.

구체적으로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인 Financial Action Task Force(FATF)⁴²⁾가 제안한 방침을 영국에서도 따를 것이라고⁴³⁾ 밝히고 있고,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실무에서는 현재 이미 비트코인 사업자들은 자율적으로 자금세탁방지법상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정부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에 대해 화폐성, 증권성 등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금융규제체계상 가상통화취급업자에 대해 금융상품취급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현재 우려되고 있는 문제와 위험에 대해 금융규제법 테두리 내에서 최소한으로 규율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그간 영국이 취한 위험에 기초한 규제라는 규제패러다임과 일맥상통하며 아울러 Regulatory Sandbox이라는 임시허가제도를 통해 규제와 혁신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정부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경우 위험성도 적지 않지만, 금융생태계에서 금융배제에 대한 개선 및 효율성을 높이는 잠재적 이점도 없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 영국정부는 혁신을 완전히 봉쇄하는 수준의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현재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상통화가 블록체이라는 기술과 DLT기법과 결합한 것을 전제하고 있는 점에서 가상통화 규제체계는 블록체인 기술과 DLT기법의 결합정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2)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FATF)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로 프랑스 파리 OECD에 본부를 두고 있는 기구로 1990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한 FATF 40개 권고사항을 제정하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자금세탁 관련 규제의 적용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는데, 특히 금융권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업무 부과는 전세계 주요국에서 일반화되어 있다. 한편, 금융권을 이용한 자금세탁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금세탁자들은 다른 루트를 더욱 활용하고 법률상 허점을 찾게 되며, 이에 따라 전문직 및 비금융업을 이용한 자금세탁사태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에 따라 2003년 6월 전문직과 비금융업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FATF 권고 2003이 채택되었다. 즉 전문직종사자(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신탁 및 회사서비스제공자 등)들이 금융관련자문이나 금융거래를 대행하면서 자금세탁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 특히, 카지노, 귀금속상, 부동산중개인 등 비금융업의 경우도 분할거래, 고액현금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에 취약하며 자금세탁자들이 빈번히 이용하는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43) 권고사항은 회원국의 입법조치를 지원하는 국제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회원국의 이행약속, 자금세탁 방지 비협조국가 지정 등을 통해 사실상의 구속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편으로 사이버상에서의 기술을 전제로 한 가상통화의 경우 한 국가 내에서 규제를 가하는 것이 실효성 있게 효과를 볼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도 없지 않다고 보여진다. 즉 사이버상에서의 거래는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한 국가에서 규제하는 것의 효과가 반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영국의 규제태도는 가상화폐의 취급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금융소비자보호차원에서 자율적 규제를 유도하는 한편, 가상화폐의 위험성이 큰 부분이라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자금세탁방지 관련하여서만 규제를 하는 것으로 혁신과 금융소비자보호를 동시에 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기술을 통한 혁신이 유망하다고 보아 이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금융허브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도 읽혀진다. 이러한 점은 regulatory sandbox의 고안과 활발한 이용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기초한 비즈니스들이 상당수 포함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정부차원의 의지와 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3. 규제기관

(1) 지급결제관련 금융감독체계 개관

영국의 지급결제관련 금융감독기관은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와 PRA(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SR(Payment Service Regulator)가 대표적이다. 현재 가상통화의 경우 영국에서는 화폐성은 부정되고 있고 있으며, 이들 모두의 관할 대상의 범위에 있지도 않다. 다만 향후 가상통화의 발전과 비중에 따라 이들 감독기관의 관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영국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감독체계상 단일감독기구에서 이른바 twin peaks를 채택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담당기구인 FCA와 건전성규제를 담당하는 기구로 PRA로 이원화된 바 있다. 건전성감독기구인 PRA는 영란은행 산하 기관이며,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FCA는 재무성산하기관으로 조직이 개편되어 소비자보호와 영업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다. 통상 FCA는 영업행위 규제위반사항에 대해 제재하는데, 이 경우 민원이 제기된 경우 감독권 행사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소비자에 의한 민원은 FOS(Financial Ombudsman Service)에 접수되고 처리된다. 다만 이 경우 그 위반이 중대하거나 금융시스템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FCA는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컨대 FCA는 위반행위가 우려되는 지급결제서비스업자의 경우 감독권의 일환으로 검사하고 위반사항 확인시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며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 다만 조치 전 FCA는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들의 소명을 우선적으로 청취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해명만으로 위반행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 한하여 직권으로 특정 정보를 요청하고 그 외 지급결제서비스업자에 대한 조사자를 선임하고 이에 관한 전문가를 지정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⁴⁴⁾

이외에 거시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영란은행, 재무성, 금융감독청등 금융감독기관이 모두 포함된 금융안정회의(Council of Financial Stability)가 설치되어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영국의 재무성은 2013년 Opening up UK Payments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대형은행들의 지배로 인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혁신이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이후 2014년 4월 ‘지급결제서비스규제기관(Payment System Regulator, “PSR”)’을 설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설립된 PSR⁴⁵⁾은 FCA⁴⁶⁾와 모자관계가 있는 기관으로 볼 수 있겠으나, 목적과 지배구조면에서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 특히 PSR은 효과적인 경쟁, 혁신, 서비스이용자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를 담당하는 FCA와 PRA와는 큰 차이가 있다.

44) FSA Supervision manual of Handbook “SUP”, 5.3, 5.4

45) PSR은 효과적인 경쟁과 혁신의 추진, 서비스이용자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46) FCA는 금융서비스업자에 대한 인가 등 진입규제와 행위규제를 주로 하는 기관으로 금융서비스업자에 대한 건전성규제까지도 담당하고 있다.

그밖에 지급결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부기관들이 관련, 참여하고 있다. 이에는 중앙은행과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 FCA, 정보위원회(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⁴⁷⁾, PhonepayPlus와 PSR도 포함되며,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는 FCA, 경쟁시장청, 정보위원회, PhonePay Plus, PSR가 관할기관이 된다.

(2) 가상화폐관련 규제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현재 자금세탁방지법 준수와 관련한 규제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FCA와 과세관청(HMRC)이 가상화폐산업에 대해 관할 감독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자금세탁방지법상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며, 이러한 조치 부과 시 반드시 위반의 유형과 성격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⁴⁸⁾ 금전적 제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HMTC와 FCA의 감독권을 활용하여 억지력을 발휘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

4. 규제내용

(1) 자금세탁방지법상의 규제

영국 내에서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기관으로는 NCIS(National Criminal Intelligence Service)와 재무성(HM Treasury), JMLSG(Joint Money Laundering Steering Group) 등이 있다.⁴⁹⁾ 이중 자금세탁관련 업무는 NCIS 내의 경제범죄기구(Economic Crime Unit: ECU)에서 담당하고 있다.⁵⁰⁾

최근 영국 재무성은 2016년 8월 5일 EU 제4차 자금세탁방지지침(4MLD)을 국내법화하는 것에 관한 정책검토서를 발표하고 이에 기초한 2017 자금세탁법 개정안(Money

47) 유럽지침에 따라 Data Protection Act 1998의 준수를 위하여 정보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다만, 구속력은 없다.

48) HM Treasury, Money Laundering Regulations 2017: Consultation, 26 June 2017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money-laundering-regulations-2017/money-laundering-regulations-2017>)

49) 안형도&김종혁,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주요국 운용사례와 제도 도입방안, 정책연구 05-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12.30. 39면.

50) 안형도&김종혁, 앞의 보고서, 39면.

Laundering Regulation)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유럽위원회가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는 4차 자금세탁방지지침 개정안을 발표하여 전자화폐거래소 및 전자지갑운영자의 경우 고객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준법감시태세를 갖추도록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영국 재무성은 정책검토서를 발표하면서 EU위원회가 제시한 시행일정에 우려를 표하면서 다소 연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자금세탁방지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적 이슈들이 새롭게 등장하였는데, 이에는 송금업자에 대해서도 적격요건(fit and proper)을 요구할 것인지에 관한 이슈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법개정안에 의하면 행위규제로서 고객조사의무가 요구되며 이러한 고객조사의무는 강도와 범위에 따라 간이조사의무, 표준조사의무, 강화된 조사의무 등으로 구분된다. 이 경우 고객의 유형, 지리적 범위, 상품의 종류, 서비스와 거래 등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규율태도는 위험에 기초한 규제접근방식(risk based approach)을 채택한 것으로 규제를 받는 산업과 업자는 거래상대방의 위험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그러나 현재 영국에서는 일정액 이상의 거래가 일어나는 사업장 및 개인에 대하여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다.⁵¹⁾ 혐의거래보고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혐의거래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NCIS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2년형이 부과된다.⁵²⁾

그러나 전 사업장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운용은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강하다.⁵³⁾

한편, 전자화폐의 경우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간이화된 고객조사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예컨대 저장된 금액이 최대 250유로를 넘지 않는 경우 또는 영국 내 거래에서

51) 안형도&김종혁, 전계보고서, 41면.

52) 안형도&김종혁, 전계보고서, 41면.

53) 안형도&김종혁, 전계보고서, 41면.

지급되는 전자화폐의 총액이 500유로인 경우가 해당된다. 현행 자금세탁방지규정은 2007년에 개정된 것으로 유로화의 취급시 표준 고객조사의무가 요구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 경우 보유한 기록에 대해서는 5년간 저장이 의무화된다.

(2) 세법상의 취급

1) 과세관청의 인식 및 과세정책 경과

2014년 3월 영국의 왕립과세관청(HM Revenue & Customs)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로 인해 발생한 소득 및 수수료에 대한 과세상의 취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하였다.⁵⁴⁾

우선,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처음 등장한 분산 디지털화폐로서 암호통화라고 불리며,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통화의 등장은 새롭고 계속 변화하고 있어 그에 대한 법적·규제상의 지위도 마찬가지로 진행 중이라고 보았다.⁵⁵⁾ 또한 암호통화는 매우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투자상품 또는 지급결제수단과 바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⁵⁶⁾ 과세관청도 이러한 비트코인이 P2P네트워크에서 거래되고 발행과 거래, 검증이 이 네트워크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나며 모든 비트코인거래가 블록체인이라는 공유된 대중들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⁵⁷⁾ 블록체인이 만들어질 때마다 비트코인이 생성되며 이러한 참여자에는 채굴자가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외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거래활동과 이러한 비트코인 거래가 일어나도록 당사자들에게 거래의 장을 제공하는 자도 있는 점, 비트코인을 투자수단으로 보유할 수도 있고 물건이나 서비스의 구입시 대가로 제공되는 것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⁵⁸⁾

54) HM Revenue & Customs, Policy Paper-Revenue and Customs Brief9(2014): Bitcoin and other Cryptocurrencies, published 3 March 2014(<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evenue-and-customs-brief-9-2014-bitcoin-and-other-cryptocurrencies/revenue-and-customs-brief-9-2014-bitcoin-and-other-cryptocurrencies>)

55) HM Revenue & Customs, Id.

56) HM Revenue & Customs, Id.

57) HM Revenue & Customs, Id.

58) HM Revenue & Customs, Id.

2) 비트코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영국의 경우 비트코인에 관한 부가가치과세정책은 임시조치라는 점을 단서로 달고 있는데, 왜냐하면 EU과세지침에 따라 자국 내에서의 암호통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취급도 EU 전역에서 실행되는 조약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과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통화의 현재 진행형적 성격 및 법적·규제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⁵⁹⁾ 즉 경과조치로서 부가가치관련 정책을 채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⁶⁰⁾

영국에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취급하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비트코인 채굴활동의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아 생긴 소득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⁶¹⁾ 왜냐하면 이러한 활동은 부가가치세 부과목적상의 경제적 활동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서비스와 그에 대한 대가와와의 관계가 불충분하다고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⁶²⁾

둘째, 채굴자의 다른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 예컨대 거래의 검증과 관련하여 제공한 서비스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⁶³⁾ EU의 부가가치세 지침 제 135(1)(d)에서의 면제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거래(transaction)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거래유형에는 예금, 당좌계좌, 지급, 이체, 부채, 수표, 기타 유통증권 등의 매입 등이 해당된다.⁶⁴⁾

셋째, 비트코인을 스텔링으로 교환하거나 외국통화로 교환하는 경우(예컨대 유로, 달러)에는 비트코인의 자체 가치에는 부가가치가 부과되지 않는다.

59) HM Revenue & Customs, Id.

60) HM Revenue & Customs, Id.

61) HM Revenue & Customs, Id.

62) HM Revenue & Customs, Id.

63) HM Revenue & Customs, Id.

64) HM Revenue & Customs, Id.

넷째, 비트코인거래를 주선하거나 실행하여 받는 수수료도 EU부가가치세 지침 제 135(1)(d)에 의해 면제된다.

다섯째,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트코인 내지 유사한 암호통화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가액은 거래가 발생한 시점의 암호통화의 스텔링가치로 매겨지게 된다.

3) 법인세 · 소득세

비트코인 내지 유사한 암호통화와 관련된 활동으로 인해 얻은 수수료와 소득의 취급은 다른 활동과 마찬가지로 활동과 당사자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자본차익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우선 이중통화의 교환가치변화로 발생한 이익 내지 손실은 과세대상이 된다. 가상통화에 관한 과세취급에 있어서 외환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비트코인 관련 거래로 인해 이익과 손실을 본 경우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회계 및 세무처리에 반영될 수 있다.

미설립법인이 비트코인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한 이익과 손해는 통상의 소득세 부과규정에 따라 회계처리 되고 과세가 부과된다.⁶⁵⁾

4) 자본차익세

한편, 비트코인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자본차익세가 부과된다. 반면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개인의 경우 공제대상이 된다.

5) 효과와 평가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과세방침이 경과규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적절할 경우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밝혔다. 이러한 과세관청의 태도에 대해 가상화폐 산업에서는 환영을 하였는데, 왜냐하면 여하간 가상화폐의 조세상의 취급에 관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65) HM Revenue & Customs, Id.

5. 향후 예상

(1) 한동안 규제상 신중한 태도(Wait and See Approach) 유지 전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영국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 자금세탁방지법의 규제만 받는 것으로 하여 규제상 매우 제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지속적으로 규제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한편으로 자율규제차원에서 전통적인 지급결제기관과 유사하게 규제를 준수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통적인 지급결제기관과 동일한 규제가 부과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고, 적어도 가상화폐관련 거래위험성을 고지하도록 하고, 분쟁시 관련 처리절차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영국정부는 가상화폐 기술의 발달정도와 가상화폐 사용률 등의 비중을 고려하여 이러한 산업에 진입하려는 창업에 장애가 되지 않고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기존의 보호방식 그대로 제공하는 데에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영국의 태도는 국제적으로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입법을 한 국가와 비교하여 볼 때 금융소비자보호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경우 자금결제법의 개정을 통해 가상통화교환업을 등록제로 하되 이에 대해서는 행위규제를 통해(정보의 안전관리, 가상통화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기관에 대해서도 지도할 의무를 부과) 이용자보호조치의 강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자금결제법은 이용자보호등에 관한 조치로서 취급하는 가상통화와 법정통화·외국통화와의 오인방지를 위한 설명, 수수료 기타 가상통화교환업에 관한 계약내용에 관한 정보제공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자금결제법에서는 가상통화교환업자에 대한 감독차원에서 가상통화교환업자에 대한 장부서류의 작성·보존의무, 가상통화교

환업자에 의한 사업보고서등의 내각총리대신에의 제출의무, 감독당국에 의한 가상통화교환업자에 대한 검사 등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외에 내각총리대신에 의한 가상통화교환업자에 대한 업무개선명령, 업무정지명령, 등록취소 등의 처분도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다.

현재 가상화폐관련 산업과 거래에 대한 입법례적으로 영국의 유연한 태도는 향후 가상화폐 기술의 발전과 이용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현재의 태도가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요컨대 가상화폐 관련한 영국정부의 태도는 ‘금융소비자 이익 증대’와 ‘혁신’을 비교형량하면서 결정·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영국에서 시도되고 지원하는 혁신은 일명 ‘파괴적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그 방향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전자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다.⁶⁶⁾⁶⁷⁾ 아울러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영국의 위상을 유지시키려는 금융정책적 패러다임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2) Wait and See Approach의 변화 요인들

1)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른 신중 거래기법의 등장

그러나 사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러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면도 없지 않다.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이용하여 실상 구조나 성격면에서 비트코인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가상화폐들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이다.

66) 이러한 점에서 영국의 경우 RegTech에 대해서도 지원·육성하고 있음은 주목할 점이다. “레그테크(RegTech)”란 핀테크의 하위개념으로 규제준수를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술은 특히 금융산업에 진입하는 IT기업에게 매우 필요한데, 왜냐하면 IT기업은 이른바 규제업이라고 불리는 금융산업의 엄격한 규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2015년에는 Call for Input(CFI)라는 이름으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에게 레그테크를 위하여 향후 취해야 하는 액션플랜과 중요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이외에도 수차례 라운드테이블의 개최, 간담회 등으로 관련기업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안수현, 영국의 핀테크관련 법제도와 지원정책: 지급결제산업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49권, 강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년, 212면.

67)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영국정부는 2014년 범규준수와 기술을 결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레그테크(RegTech)라는 것을 제안하였고 이후 금융감독기관인 FCA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부응하고 있다. 안수현, 위의 논문, 212면.

대표적으로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분산원장기술인 블록체인을 이용한 토큰의 발행(Initial Token Offering) 및 매매와 관련하여 미국 증권감독기관은 이러한 token의 발행을 증권으로 보아 규제하고 있다.⁶⁸⁾ 즉 증권법상의 등록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발행한 경우 위반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2017년 6월 25일 SEC는 가상회사가 발행한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판매는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경고하면서 시장참가자들에게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다.⁶⁹⁾

미국의 경우 통상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 증권인지의 여부는 사실관계와 당해 거래의 경제적 실체에 따라 판단하는데, DAO(digital autonomous organisation)라는 가상회사가 블록체인을 이용한 토큰을 발행하고 판매한 사안에서 이를 ‘증권’으로 보았다.⁷⁰⁾ 이 사건의 경우 DAO는 일종의 분산형 벤처캐피탈로 볼 수 있는데, 블록체인 등에 투자하는 Ether를 자금조달로 받은 것이다.

조사보고서에서 SEC는 분산원장 내지 블록체인기술에 기초한 증권발행시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증권의 매매시에도 등록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등록면제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그러한 미등록상태에서의 발행 및 매매는 증권법 위반이 된다고 경고하였다.⁷¹⁾

더구나 주목할 점은 DAO사건에서 DAO는 가상화폐인 Ether를 받고 DAO Token을 팔았는데, 이러한 거래는 크라우드펀딩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DAO Token 판매시 증권사 내지 등록된 크라우드펀딩 포털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크라우드펀딩 규제도 위반하였다. ICO과 IPO(최초 증권공모)와 다른 것은 발행기업의 독자적인 가상화폐를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하여 자금조달을 하였다는 점이다.

68) SEC, SEC Issues Investigative Report Concluding DAO Tokens, a Digital Asset, Were Securities, Press Release,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17-131>)

69) SEC, SEC Issues Investigative Report Concluding DAO Tokens, a Digital Asset, Were Securities, Press Release,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17-131>)

70) SEC, SEC Issues Investigative Report Concluding DAO Tokens, a Digital Asset, Were Securities, Press Release,

71) Id.

다만 조사보고서에서 SEC는 이 사건 위반을 놓고 제재를 가하지는 않고 시장과 업계에 조심할 것을 당부한다고 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SEC의 검사 및 제재부서의 책임자인 Stephanie Avakian은 “가상거래 뒤에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해서 투자자와 시장의 투명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증권공모규제와 거래플랫폼 규제 등에서 면제를 받을 수는 없다”고 견해를 밝혔으며, 공동책임자인 Steven Peikin도 “기술이 발전할수록 비즈니스 운영과 자본조달방법 역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참가자들은 반드시 증권법의 적용 여부에 대해 주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⁷²⁾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SEC의 투자자교육과 지원부서(Office of Investor Education and Advocacy)는 투자자전단지(investor bulletin)를 통해 Initial Token Offering과 같이 증권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등록, 공시규정 등)에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투자스킴의 경우 투자사기로서 유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⁷³⁾

미국의 이러한 태도를 놓고 블록체인과 같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ICO의 발행을 계획하는 벤처기업들은 발행과 거래가 용이한 다른 나라⁷⁴⁾로 이동할 것이라는 예상도 없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과 증권법제가 유사한 캐나다의 경우 아무런 공식대응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나라별로 태도가 같지는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후 initial token offering에 대하여 영국의 태도가 어떠한 지에 대해서는 업계와 각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 해킹사고의 빈발

블록체인기술의 전망은 매우 높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 거래소들이 빈번히 해킹을 당하고 있는 것도 향후 영국의 규제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⁷⁵⁾ 2015년

72) Id.

73) Id.

74) 최근 홍콩에서 한 회사가 initial coin offering으로 자금조달에 성공했다. TECHINASIA, Hong Kong Company Raises \$185m in record-breaking initial coin offering, July 2, 2017 (<https://www.technasia.com/hong-kong-company-raises-185m-record-breaking-initial-coin-offering>)

75) 이정훈·김두원, 가상화폐 관련 형사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28권 제2호(통권 제110호, 201

1월에 슬로베니아에 본사를 둔 비트스탬프(Bitstamp)에서 해킹이 일어나 해당 사이트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약 12%인 18,866 BTC가 도난당했다.⁷⁶⁾ 그리고 2016년 8월 비트피넥스(Bitfinex) 비트코인거래소가 해킹당했고 이 경우 해킹으로 비트코인 6500만달러(약 725억원)상당이 절취되는 등⁷⁷⁾ 사고가 계속 발생하였다.

제3절 독일

1. 규제배경 및 특징

(1) 규제배경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규제대상인지 결정하기에 앞서 출발점은 통상 그 대상이 해당 법체계하에서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법적으로 그 성격을 규명하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독일에서는 공법적으로 우선 규율대상인지 여부가 검토되기 시작하였다. 즉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금융감독기관인 BaFin(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은 비트코인 거래플랫폼 운영자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부터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허가를 요하는지 검토된 배경에는 온라인사기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아울러 비트코인 관련 자금세탁을 통제하기 위함이었다. 독일의 경우 Bitcoin24라는 이름의 거래소를 운영하는 자가 투자자로부터 금전과 수수료를 받고도 비트코인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사기혐의로 체포된 바 있기 때문이다⁷⁸⁾.

물론 그에 앞서 독일 재무성은 비트코인을 사적 금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BaFin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⁷⁹⁾

7 · 여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7면.

76) 이정훈 · 김두원, 앞의 논문, 46면.

77) 이정훈 · 김두원, 앞의 논문, 46면.

78) Bitcoin24 lässt wieder Abhebungen zu, Heise Online, 2013. 5. 3 k-lenz. de/bit14

79) Seth Litwack, BitCoin: Currency or Fool's Gol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egal Classification of Bitcoin,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이용이 급증하자, 2013년 12월 18일 독일 금융감독청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규제할 지에 관한 검토결과⁸⁰⁾를 발표하였다.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은 70%나 급등하였고, 독일 내 비트코인거래소(Bitcoin.de)에서의 거래도 급증하고 있는 상태였다. 당시 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⁸¹⁾은 물론 독일중앙은행 역시 비트코인의 투자위험성에 대하여 경고를 한 상태였다. BaFin은 당시 전문가논단(expert article)을 통해 비트코인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즉 비트코인의 구조상 현금과 같이 상실 내지 절취될 수 있는 반면 통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주의하여야 한다고 경고한 것이다. 아울러 한정된 발행물량을 고려해 볼 때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거래비용도 증가하면서 비트코인을 인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거래비용이 낮은 것이 비트코인을 인기 있게 한 요인이기도 하지만, 비트코인의 채굴은 갈수록 복잡해질 것이기 때문에 거래비용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다만 그 비용은 전통적인 은행거래비용만큼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비트코인 가격의 극심한 변동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지급수단으로서의 진정한 의사 없이 투기적 목적으로 거래하는 자가 많아짐에 따라 가격의 극심한 변동과 버블을 초래하여 가격하락에 대한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비트코인 시스템에 다양한 이용자가 거래상대방으로 참여하지만 이들의 기술전문성은 매우 다양한데, 이들 중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 외 자금세탁과 그 밖의 불법적인 거래에 이용될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위험으로 인하여 경찰의 수사대상과 계좌동결 및 거래소운영 중지 등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예상하지 않은 손해가 있을 수 있음도 경고하였다.

BaFin은 비트코인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2013년 전문가논단(expert article)을 통해 비트코인은 화폐 또는 법정 통화에 해당하지 않으며, 독일 지급서비스감독법(Zahlungs-

Temple Int'L & Comp. L.J. 29.2, p. 323 (<https://sites.temple.edu/ticlj/files/2017/02/29.2.Litwack-TICLJ.pdf#search=%27bitcoin++bafin+banking+act%27>)

80) Jens Münzer, Bitcoins: Aufsichtliche Bewertung und Risiken für Nutzer, BaFinJournal, BaFin, 2013.12.19.

81) EBA, EBA warns consumers on virtual currencies, 13 December 2013

diensteaufsichtsgesetz) 상의 전자화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전자화폐란 독일지급서비스법상 현금과 전자적 등가치성을 가진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통화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통화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비트코인의 경우 발행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행인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비트코인은 중앙집중시스템을 갖고 있는 지급수단들과는 차이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비트코인은 화폐, 법정통화 및 지급서비스감독법상의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비트코인으로 지급하거나 채굴은 법상의 규율대상이 아니며, 허가를 요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채굴자가 비트코인의 발행인 내지 비트코인 인수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사는 행위 내지 물건을 파는 행위도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처럼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비트코인을 사적 화폐(예: 지역통화 내지 일정 점포에서만 사용하는 한정된 화폐)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은행법상의 허가를 요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즉 이하에서 설명하듯이 은행법상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형사상 제재를 받음을 주지시킨 것이다(은행법 제54조).

특히 비트코인의 가격을 제시하고 매매중개를 광고하는 경우 내지 채굴한 비트코인으로 부터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은행법상의 허가를 요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에서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의 하나로 인정한 바 있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독일에서 비트코인의 거래 증가를 예상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로 평가받고 있다. 왜냐하면 독일은 현금을 강하게 선호하는 국가이며, 중앙은행 총재 역시 재차 통화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투자자에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⁸²⁾.

82) Barbara Wollsey, Germany's Central Bank Advises Against Bitcoin, Handelsblat Global, 9. May 2017.

이처럼 독일은 일찍부터 가상화폐가 불법적인 활동에 사용되고 테러자금에 이용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EU각료회의에 가상화폐 특히 비트코인과 리플이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강화된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였다⁸³⁾. 이러한 주장은 효과가 있어 EU의 제4차 자금세탁방지 지침을 개정하는데 반영되기도 하였다.

(2) 규제특징

전술한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 사법상 비트코인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내재적 성격과 구조상 다양한 위험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법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점에 특징이 있다.

아울러 규제방식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독일 감독법적 규제체계하에서 이미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규율할 수 있는 규제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점, 이를 통해 비트코인을 상업적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규제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산업에 참여하려는 스타트업에 대하여 주의하도록 경고하고 있는 점,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규제를 통해 비트코인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이 합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비트코인을 채굴하거나 비트코인으로 물건이나 재화를 구입하는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의 금융규제는 없지만, 비트코인을 매매하거나 통화와 환전하는 등의 경우에는 상업적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보아 기존 은행법상의 규정을 통해 규율대상이 되게 하는 점 등에서 차등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독일 중앙은행은 그 폐해에 대한 위험성에 관해 지속적으로 투자자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방은행 총재와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들은 비트코인은 과도하게 위험한 투자물이라고 경고하고 있다.⁸⁴⁾ 설계면이나 높은 변동성 때문에 매우

83) Robert Courtneidge/Charlie Clarence-Smith, Bitcoin and Blockchain Technology Update: Reserch Paper, Locke Lord (UK) LLP, Feb. 2017, at 3.

84) Dont't Buy Bitcoin! Says German Central Bank, May 10, 2017 (<http://www.newsbtc.com/2017/05/10/germany-cen>)

투기적이고 안전하지 않으며 금이나 기타 상품과 비교할 수 없으며 문제가 생길 경우 구입자에 대한 보호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⁸⁵⁾ 다만 금융안정성면에서는 비트코인은 낮은 거래량 및 회전을 고려해볼 때 위험을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진단했다.

한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에서 이용될 신기술로 주목하고 있고 거래소와 증권거래에 있어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비트코인에 대하여 틈새산업으로서 성장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자금세탁방지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한 별도로 규제하는 입법을 마련하려는 의도는 없다는 메시지도 함께 보냄으로서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2. 규제근거

(1) 은행법(Kreditwesengesetz, KWG) 제32조 제1항

독일의 경우 이미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규율할 수 있는 규제체계가 은행법상 마련되어 있는데, 독일은행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독일 내에서 은행업 또는 상업적으로 금융서비스(Finanzdienstleistungen)를 영위하려고 하거나 상업적 방식으로 하는 기업을 설립하려는 자는 금융감독청(BaFin)으로부터 서면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청은 행정법 제37조 제4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은행법 제1조 정의규정 (1a), (2)항에서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⁸⁶⁾, 이에 의하면 금융상품(Finanzinstrumenten)의 매매는 금융서비스에 속한다고 규정

tral-bank-bitcoin-purchase/)

85) Carl-Ludwig Thiele, Zahlungsverkehr und Wertpapierabwicklung-Herausforderungen aus Sicht der Bundesbank, Payments Symposium 2017. 5. 18.(https://www.bundesbank.de/Redaktion/EN/Termine/2017/2017_05_18_payments_symposium_2017.html)

86) 은행법

정의규정

-중간생략-

1) 금융서비스업자란 금융서비스를 업으로서 타인에게 제공하는 자로서, 은행이 아닌 자를 말한다. 금융서비스에는 다음 각호의 것이 해당된다.

하고 있으며 금융상품에 관해서는 동법 제1조 제1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데⁸⁷⁾, 이에 는 증권, 단기금융시장상품, 외환거래, 계산단위(Rechnungseinheiten), 파생상품 등이 해당한다. 즉 계산단위(Rechnungseinheiten)가 금융상품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계산단위란 교환거래에서 사적 지급수단의 기능을 하는 것 또는 사법상의 계약에 의해 다자간 청산에서 화폐를 대신하는 것으로 지급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규율체계 하에서 BaFin은 비트코인을 금융상품 중 계산단위(Rechnungseinheiten)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⁸⁸⁾ 따라서 BaFin은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상업적으로 다음의 경우처럼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금융상품의 매매 중개(투자중개업)

1a. 특정 금융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추천하는 행위. 이 때 투자자의 상황을 조사하고 추천하여야 하며 그에게 적합하여야 한다. 성향등의 조사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정보배포채널이나 대중에게 공시된 정보 등에 기초해서는 아니된다.

1b. 금융상품의 다자간체결시스템 운영

1c. 금융상품 인수

2. 금융상품의 위탁매매

3. 금융상품의 자산운용

4. (a) 조직화된 시장 또는 다자간체결시스템에 시가로 제공하거나

(b) 조직화된 시장 또는 다자간체결시스템 밖에서 자기계정으로 거래를 조직화 및 체계적으로 운영하거나 거래를 위해 독립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경우

(c) 타인을 위하여 자기계좌로 금융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d) 고빈도거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국내 조직화된 시장 또는 다자간체결시스템에서 자기계좌로 금융상품을 매매하는 행위(자기매매업)

5. EEA지역외 설립된 회사와의 예금거래를 중개하는 행위

6. 삭제

7. 환거래

省略

87) 11) 제1호 내지 제3호 그리고 제17호 및 제2조 (1)과 (6)에서 정의한 금융상품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국내의 법인·조합 기타 회사의 주식, 지분, 기타 이에 유사한 것. 증서도 포함

투자법 제1조 (2)에서 정의한 자산. 다만 조합법 제1조에서의 조합지분은 제외한다.

채무증서 및 이에 유사한 것으로 자본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것. 증서도 포함. 다만 지급수단은 제외한다.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취득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 내지 기초자산(권리, 통화, 금리, 기타 소득, 상품, 지표, 가치등)에 기초하여 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

투자자보호법 제1항 (1)에서 정한 펀드시분

단기금융상품

외환과 계산단위

파생상품

88) BaFin, .. Hinweisen zur Erlaubnispflicht nach §32 Abs. 1 KWG". p.1

요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⁸⁹⁾ 이렇듯 비트코인은 기존의 규제체계 하에서 규율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2) 은행법상 허가가 필요한 경우

은행법상 허가가 필요한 경우란 금융상품을 상업적으로 매매하는 경우가 해당되는데, 이에 (i) 금융상품 위탁매매(Finanzkommissionsgeschäfte) (ii) 투자중개·계약체결 중개(Vermittlung) (iii) 다자간거래시스템 운영(Multilaterale Handelssysteme) (iv) 자기계정거래(Eigenhandel)가 해당된다.

1) 금융상품 위탁매매(Finanzkommissionsgeschäfte)

우선, 위탁매매란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명의로 비트코인을 상업적으로 매매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은행법상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비트코인거래플랫폼의 경우 (i) 비트코인거래와 관련하여 비트코인 거래량 및 가격에 대해 참여자가 지시한 것을 플랫폼 운영자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경우로서 (ii) 참여자가 자신의 거래상대방을 알지 못하고 플랫폼이 자기명의로 거래하는 경우 및 (iii) 거래의 경제적 효과가 차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위탁매매업자에 해당하여 은행법상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영위가 금지된다.

2) 다자간 거래시스템 운영(Multilaterale Handelssysteme)

한편, 비트코인거래플랫폼은 다자간 거래시스템 운영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경우 금융기관처럼 허가가 요구된다.

다만, 다자간거래시스템운영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문이 없지 않은데,⁹⁰⁾ 왜냐하면 다자간 거래시스템(MTFs)은 독일은행법과 증권거래법(Wert-

89) BaFin, Trading in Bitcoins, 17 June 2014

90) Tanja Aschenbeck-Florange, Regulation of Bitcoin in Germany: First comprehensive Statement on Bitcoins by German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BaFin), Feb 5, 2014 <https://bitcoinmagazine.com/articles/regulation-bitcoins-germany-first-comprehensive-statement-bitcoins-german-federal-financial-supervisory-authority-bafin-1391637959/>

papierhandelsgesetz) 의 규율을 모두 받는데, 독일은행법은 MTF의 운영자에 대한 허가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증권거래법에서는 MTF 운영시 준수하여야 할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MTF운영자는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 때문에 비트코인 MTF운영자는 개인을 거래자로서 참여시키는 것이 불허된다.⁹¹⁾

그러나 이에 대하여 비트코인 MTF의 운영자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가능하며, 이에 의하는 경우 비트코인 MTF의 경우 개인을 거래자로서 참여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주장은 비트코인은 은행법상의 계좌단위(Rechnungseinheiten)로서 은행법상의 허가대상인 것은 맞지만, 증권거래법상의 규율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을 근거로 내세운다. 증권거래법상 규율대상은 투자서비스와 그에 부수한 서비스의 제공과 거래소 및 장외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 그리고 금융 선물 및 선도계약의 체결, 금융분석,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지분변동이기 때문이다(동법 제1조 제1항).⁹²⁾

이러한 주장에 따를 경우 비트코인 MTF운영자는 은행법상의 금융서비스기관에 해당하고 이에 필요한 허가를 요하는 것에 그치고 MTF에 개인의 참여를 배제시킬 필요까지는 없게 된다. 그러나 감독기관이 발행한 ‘BaFinJournal’에서는 이러한 해석을 경계하고, 비트코인 MTFs에 대하여 증권거래법과 마찬가지로의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3) 투자중개·계약체결 중개(Vermittlung)

투자중개·계약체결 중개행위에는 비트코인거래 목록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게시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은행법상의 허가를 요한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의 경우에는 은행법 외에도 상거래 및 산업규제법(Gewerbeordnung)이 적용된다.⁹³⁾ 이에 대해 단순한 게시에 불과한 것은 규제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91) Tanja Aschenbeck-Florange, Regulation of Bitcoin in Germany: First comprehensive Statement on Bitcoins by German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BaFin), Feb 5, 2014

92) Id.

법에서 중개를 넓게 해석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비판이 없지 않다.

4) 자기계정거래

자기계정거래는 ‘proprietary trading’이라고 불리는데, 이에는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교환하거나 환전소를 운영하는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금융 서비스가 되기 때문이다.

이외 (i)금융상품의 가격을 제시하고 광고하는 행위, (ii)채굴한 비트코인으로부터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는 경우 등도 은행법상 허가를 요한다.⁹⁴⁾

(3) MiFid(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II

EU에서 투자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투자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규제시장(regulated market), 투자회사와 신용회사 등 폭넓게 동 지침의 영향을 받게 된다. 예컨대 거래소, 투자은행, 브로커·딜러, 투자운용회사 및 MTF가 이에 해당된다.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 거래가 투자서비스로 제공될 경우 동 지침은 매우 중요한 법원이 된다.

유럽의 입법기관의 하나인 유럽연합이사회는 2014년 5월 13일 금융상품지침(MiFID)을 개정하는 제2차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 및 금융상품시장규칙(MiFir)을 가결하였다. 이후 같은 해 5월 22일 EU증권시장감독기구인 ESMA는 신지침·신규칙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정한 하위규정에 관한 기술적 기준안(draft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 및 적용상의 기술적 기준안(draft implementing technical standard)에 관한 검토보고서(discussion paper)와 EU위원회가 신지침·신규칙에 관한 위임입법을 제정하기 위한 기술적 조연에 관한 자문보고서(consultation paper)를 공표하였다. 특히 신규칙은 EU회원국에 직접 효력이 있다. 신지침과 신규칙은 실질적으로 1개의 규제체계로 구축되어 있는 것인데 2부분으로

93) Tanja Aschenbeck-Florange, Regulation of Bitcoin in Germany: First comprehensive Statement on Bitcoins by German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BaFin), Feb 5, 2014

94) <https://www.winheller.com/en/banking-finance-and-insurance-law/bitcoin-trading/bitcoin-and-bafin.html>

나는 것은 EU 전체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만 하는 규정과 각국의 현행법 등과의 조화를 통해 도입되어야 하는 규정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예컨대 신지침에서는 투자서비스회사의 인가 및 조직요건, 투자자보호, 조직화된 거래시설(Organised Trading Facility, OTF)의 인가조직요건 등, 각국에서 국내법화가 요구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에 신규칙에서는 거래의 투명성 요건, 그 적용제외(dark pool규제), 거래시설 및 청산기구에서의 비차별 접근허용, 파생상품거래시설에서의 거래의무 등 주로 국경을 초월한 인프라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신지침·신규칙의 적용대상은 투자서비스회사, 시장운영자, 데이터보고서비스·제공자, 역내 지점을 둔 투자서비스·투자활동 영위자 등이 된다. 투자서비스·투자활동 영위자에게는 구체적으로 금융상품의 주문을 받거나 전달하는 경우, 고객을 대리하여 주문을 집행하는 경우, 자기계정으로 거래하는 경우,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조언, 금융상품의 인수·전액매수 후 판매, 일부 매수 후 판매, MTF·OTF의 운영 등이 된다. 그 외 투자서비스·투자활동에 부수하는 서비스도 적용대상이 된다. 이에선 증권의 보호예수, 신용거래, 투자에 수반되는 외환업무, 리서치 등이 해당되며, 투자서비스·활동에 부수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규제기관

(1) 연방 금융감독청

1) 설립근거

독일의 경우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금융감독기관은 단일 금융감독기관으로 2002년 BaFin(BaFin, Die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이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모든 금융회사들을 감독하고 있다. 즉 BaFin이 감독과 집행기구가 된다.

이러한 BaFin의 조직상의 근거법은 FinDAG(Gesetz über die integrierte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gesetz)로 종래 3개로 나뉘어 있던 금융감독기관이 통합하여 단일 금융감독기관으로서 설립되었다.

그러나 BaFin의 업무범위와 의무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WpHG)에서 규정하고 있다. 독일 내 증권거래법 개정은 재무성(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에서 담당한다. BaFin은 집행기구로서 증권법 집행과 관련한 영역에 제한된 규칙제정권만을 갖고 있다.

2) 임무와 정책

BaFin은 FinDAG 제16I, 제15조에 따라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당사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 회비 등으로 재정을 충당한다. 대신 공중의 이익을 위하여 시장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즉 BaFin의 역할은 시장메커니즘을 유지하고 질서 있는 거래를 담보함으로써 금융 소비자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이다. 한편, 각각의 증권거래소는 이하에서 상술하듯이 BaFin의 감독대상이 아니다.

3) 조직과 감독

BaFin은 연방정부의 통제를 받으며 재무성 관할이다. BaFin은 단일 감독기구로서 내부에 은행, 보험, 자본시장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있다. 다만 거래소는 BaFin의 관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대신 주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이처럼 감독권을 분할한 것은 연방법과 주법간의 관할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GG(Grundgesetz) 제74I 11에 의거하여 증권거래법은 연방법에 속하는 반면 주식시장법은 주법에 속하기 때문이다.

한편 2011년부터 유럽감독기구인 ESMA(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도 BaFin의 감독을 감시하고 있다.

4) 규정제정권

BaFin은 일정한 범위에서만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그 외에 행정행위와 비공식적 조치를 통해 감독할 수 있다. BaFin은 증권거래법에 의거하여 일반적으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외국감독기관과의 공조에 관한 사항이나 내부정보에 관한 공표 등에 대해서만 규정 제정권이 인정된다. 그 이유는 재무성이 감독에 필요한 규정제정권을 수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권거래법 제29조, 제35에 따르면 BaFin은 행정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지만 규정의 해석으로서 다수의견⁹⁵⁾은 규제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 가이드라인은 영향을 미치며, 자기구속원칙(Selbstbindung)으로 기능하고 있다.

5) 최근의 감독 경향

BaFin은 최근 행정법 및 규제분야에서 이른바 법률행위 중심(Rechtaktzentrierung)에서 행위중심(Verhaltenzentrierung)의 감독기법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⁹⁶⁾ 즉 행정조치들을 공표하여 BaFin의 감독을 받는 행위들의 추상적인 기준들을 설정,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 외에도 비공식적 조치를 사용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에는 비공식적인 간담회 개최, 정보지, 보도자료, FAQ형식의 정보 제공, 유권해석집 제공 등이 이에 해당되며⁹⁷⁾ 이들은 사실상 규정제정권의 기초가 된다.

6) 피규제기관

한편, 독일은 전통적으로 유니버설뱅크를 채택하여 은행 본체에서 증권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유니버설뱅크에서 은행이 가장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외에 예금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전문은행이 있으며, 은행 외의 금융기관으로 보험회사, 연기금, 리스회사, 팩토링회사, 카드회사 등이 있다. 이들 리스회사, 팩토링회사, 카드회사 등은 통상 금융서비스기관이라고 불리고 있다.

한편, 은행은 BaFin과 연방중앙은행 두 곳의 감독을 받으며, 그 외 금융기관들은 BaFin의 감독과 규제를 받는다. 다만, 보험회사만 BaFin과 주 감독기관의 감독을 모두 받도록 되어 있다.

95) Schwark, in: Schwark/Zimmer, Kapitalmarktskommentar(2010), §35 WpHG para.11

96) Bumke, Relative Rechtswidrigkeit, 2004, 255

97) Giesberts, in KK-WpHG, 2. Ed., §4, para 28.

7) 감독과 검사

규제는 감독과 검사를 통해 수행되며, BaFin의 일상 업무가 된다. 특히 사전적인 관점에서 감독은 시장의 불안정을 막는 선제적 요소가 된다.

8) 제재

BaFin은 조사권, 명령권, 과징금 부과, 거래중지 등 다양한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제재조치 결과는 공표된다. 특히 독일은 EU회원국으로서 EU가 유럽의 제재수준을 통일하기 위해 만든 2013/50/EU, Abl. EUL 294/13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EU는 제재금 부과에 있어 위반중대성, 위반기간, 위반정도, 재정능력, 방조여부, 과거 제재부과경력 등을 고려하여 제재금을 결정하는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BaFin이 조사하는 경우 피규제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제재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⁹⁸⁾ 그 외 위반자를 공표하는 방식(Name Shaming)도 사용하고 있다. 한편, 검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증권거래법 제8조와 행정기본법 제12조에 의해 보호된다. 그러나 형사규정 위반시 또는 행정절차 위반에 관한 정보들은 민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⁹⁹⁾

(2) 가상화폐 규제기관

가상화폐의 경우 은행법상 허가를 요하는 경우 BaFin의 감독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은행법상 허가를 요하는 비즈니스를 함에도 불구하고 BaFin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제재조치가 부과된다.

최근 BaFin은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세 개의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하여 중지 명령(cease and desist order)을 발한 바 있다.¹⁰⁰⁾ 이들 거래소들은 자기계정으로 가상화폐

98) Fischer, The SEC and Bafin, 156

99) BVerwG, NVwZ 2009, 1114; Gurlit, NZG, 2014, 1161 (1165)

100) Kevin Helms, BaFin Cease and Desist Orders to Ban Onecoin Activities in Germany, May 1, 2017 (<https://news.bitcoin.com/bafin-issues-cease-and-desist-orders-to-ban-onecoin-activities-in-germany/>)

를 매매함에도 불구하고 BaFin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기계정으로 가상화폐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은행법상의 허가가 요구되는 금융서비스에 해당된다. 따라서 BaFin은 위법행위를 이유로 허가받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아울러 회사의 은행계좌를 동결하고, 허가받지 않은 송금을 취소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와 함께 두바이에 있는 회사에 대해 독일에서의 영업을 즉시 중단할 것을 명령하였다.

4. 규제내용

(1) 은행법상의 허가요건(독일은행법 제32조·제33조)

1) 최저자본금 요건

은행법상 투자자문업자, 투자중개업자, 계약체결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MTFs운영자로서 고객의 기금 내지 증권을 소유·보유하지 않고 자기계정으로 금융상품을 거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자본금으로 50,000유로가 요구된다. 따라서 가상화폐를 상업적으로 취급하는 자의 경우 최저자본금 50,000유로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의 금융서비스기관으로서 자기계정으로 금융상품을 거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자본금은 125,000유로가 된다. 자기계정으로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금융서비스기관의 경우이거나 예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730,000유로가 요구된다. 반면 투자자문업자, 투자중개업자, 계약체결중개업자로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의 기금이나 증권을 소유하거나 보유하지 않고 자기계정으로 금융상품을 거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25,000유로(아울러 EU중개지침에 따라 보험중개인으로서 등록한 경우)가 요구되고 있다.

2) 인적·물적 요건

아울러 BaFin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적·물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우선, 경영자 및 대주주 등이 사기 등의 전과가 없어야 한다. 즉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직무를 수행할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영업소재지가 독일 내에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거래소의 경우 운영형태가 적절하여야 한다.

3) 허가신청서 기재사항

은행법상 허가신청서 기재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회사운영에 필요한 수단 입증자료로 신용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기업설립 증거(최초자본금 납입내역 등), 기존기업이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자본금 존재 여부에 대한 외부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이 필요하다.

둘째, 고위관리자에 관한 상세사항으로 고위관리자 성명, 회사 및 고위관리자의 신용평가 정보(범죄, 형사소송제기 여부, 기업의 파산 절차 진행 여부 등)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셋째, 경영진 감독기구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회 구성원·감사기구 구성원의 성명 및 신뢰성·전문성·충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고위관리자(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경영자 포함) 전문성과 충실성 관련 정보로서, 최근 3년간의 고용기록을 포함한 이력서, 성명, 생년월일, 부모성명, 주소, 국적 및 전문교육에 대한 상세설명 등이 요구된다.

다섯째, 사업의 성격에 대하여 사업운영 3년간의 대차대조표 및 예상 손익계정, 해당 기관의 조직구조(지사 설립 여부, 국경 간 서비스 존재 여부, 아웃소싱 여부 등 명시), 은행법 및 증권거래법 준수 보장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보유지분에 관한 내용으로는 상당한 지분보유자의 성명, 참여자 분량 및 소유자(법적대리인 포함)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상당한 지분보유자가 그룹인 경우 그룹조직, 과거 3년치의 연결재무제표, 독립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제출, 대량보유자가 없는 경우 상위 지분보유자 20위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은 고객 보호관련 사항으로,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법적인 무능력 또는 기타 사유로 사업운용을 중단한 경우 고객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범위 명시하도록 하였다.

(2) 형법 및 자금세탁방지규제

한편, 비트코인은 물건을 살 때 뿐 아니라 익명성 때문에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금전 수령시 개인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신분을 확인하는 통제장치가 있는 은행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컴퓨터 해킹이나 위협시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는 점도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¹⁰¹⁾

이러한 범죄로 얻은 자금에 대해서는 독일에서도 자금세탁방지규정이 적용된다. 독일이 회원국으로 있는 EU의 경우 역내에서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신원 확인이 요청되며, 익명의 계좌는 개설이 금지되어 있다¹⁰²⁾

독일 형법상 자금세탁방지와관련 규정(제261조)은 일체의 경제적 자산(vermögenswerte Gegenstände)에 적용된다.¹⁰³⁾ 그러나 비트코인이 자금세탁방지규정의 적용대상인 경제적 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독일당국이 이에 대해 해석 지침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자금세탁방지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될 경우 전자자금이체와 유사하게 취급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은행법상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예: 비트코인거래소, 비트코인 ATM등)에는 다른 금융거래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규정이 적용된다.

101) Digital God: why hackers love Bitcoin, thguardian, 15 May, 2017. 랜섬웨어에 공격당한 기업들 다수가 반대급부로 비트코인을 요구당하고 있고, 심지어 랜섬웨어에 피해를 입은 은행에서도 해독코드를 받기 위하여 비트코인을 해커들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고 한다.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7/may/15/digital-gold-why-hackers-love-bitcoin-ransomware>)

102) Directive 2005/6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October 2005 on the prevention of the use of the financial system for the purpose of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Consolidated version January 4, 2011, k-lenz. de/bit28.

103) Fischer, in: Beckseher Kurzkommentar, Strafgesetzbuch und Negengesetze, 57th Edition 2010, § 261 para 5 and 6

(3) 기타 규제상의 이슈

1) 손실보상기금

한편, 독일의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손실보상기금이 강제화되어 있다(AnlEntG-Anlegerentschädigungsgesetz¹⁰⁴). 때문에 비트코인도 이의 적용대상인지가 문제된다.

손실보상기금법에 의하면 기금은 적용대상기관이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증권거래로부터 발생한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추후 상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BaFin이 결정한 경우에 지급을 하게 된다. 손실보상기금법에서 말하는 증권거래란 은행법상의 투자중개, 거래알선, 재무포트폴리오 관리, 자기계정거래, 금융수수료를 받고 하는 영업, 예금거래, 증권발행 등의 은행업무 내지 금융서비스를 말한다.¹⁰⁵

이처럼 손실보상기금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금전 내지 유로화로 된 예금이여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발행자가 파산하거나 채무불이행한 경우 비트코인 매수자에 대한 보호가 충실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있다.

2) ATM 운영관련

독일 내에서 가장 활발한 비트코인 거래소인 bitcoin.de는 독일 연방금융감독청인 BaFin으로부터 금융중개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 ATM의 영위는 사실상 어려운데 왜냐하면 ATM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에서 자금이체업으로 허가받기는 쉽지 않다.

또한 ATM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MiFid(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의 MTF(Multilateral Trading Facility)로서 허가도 받아야 한다.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bitcoin.de는 Fidor은행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고객들이 은행에서 제공

104) 종전에는 Einlagensicherungs-und Anlegerentschädigungsgesetz에서 취급하였다.

105) Entschädigungseinrichtung der wertpapierhandelsunternehmen 홈페이지 참고(<http://www.e-d-w.de/en/index.html>)

하는 계좌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매매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4) 세법상의 취급

한편, 비트코인거래의 회전율의 빠른 증가는 조세당국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과세관점에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조세정책이나 조세법상으로 가상의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에 대해 독일조세법은 대비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조세당국은 그들과 달리 금융감독기관인 BaFin이 비트코인으로 표시된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지부터 궁금해 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비트코인은 전통적인 금전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이 부득이 비트코인으로 인한 소득을 과세하려면 과세가능 한 새로운 카테고리를 고안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현재 독일과세당국은 비트코인을 “경제적 자산(Wirtschaftsgut)”으로 분류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독일소득세법 제22조, 제23조).

이외 제기되는 또 다른 이슈는 비트코인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판매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이다. 독일에서는 개인 간의 거래인지 아니면 상거래에 해당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오로지 상업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만 판매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독일 판매세법(Umsatzsteuergesetz) 제1조에서 상업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하여 판매세가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거래들에는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를 비트코인에 적용하면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이용하거나 비트코인거래소에서 매수매도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채굴의 보수로서 비트코인을 제공하거나 비트코인을 통화로 환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다. 왜냐하면 사적 금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비트코인은 은행법상의 계산단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트코인거래로부터 얻은 자본차익에 대해서는 25%의 자본차익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자본차익과세가 면제된다.¹⁰⁶⁾

다만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논의와 상관없이 실제 조세정책관점에서는 실무상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왜냐하면 과세대상인 비트코인 거래를 적발하는 것이 어렵고, 과세대상인 자를 식별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과세대상을 적발하고 집행이 실효성 있을 것인지가 향후 더 논의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가 매우 절실하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요청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디지털거래는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는 감독과 집행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5. 향후 예상

앞서 살펴보았듯이 어느 나라보다도 독일은 기존 규제의 틀 안에서 비트코인이 규제된다는 점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거래 저해 방지 및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독일의 태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자국 내에서 지급수단으로서 이용편의성을 도모하되 금융소비자 관점에서의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현금이나 이체, 및 신용카드 등 전통적인 지급수단에 비해 거래절차나 수수료가 저렴하고 간편하다는 이점은 여전히 설득력을 얻지만 반면에 현금과 같이 절도·분실의 위험이 있고, 해킹 등의 위험성 및 범죄에 악용되기 쉽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갈수록 일부 채굴 집단에 의해 비트코인이 독점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들에 의한 영향력이 우려되고

106) Germany Plans Tax on Bitcoin After Virtual Currency Recognised as Private Money, THE TELEGRAPH (Aug. 19, 2013, (<http://www.telegraph.co.uk/finance/globalbusiness/10252383/Germany-plans-tax-on-bitcoin-after-virtual-currency-recognised-as-privatemoney.html>).

있으며¹⁰⁷⁾, 그 결과로 분산형 관리체제라는 이점이 상실될 가능성이 없지 않음이 우려되고 있다¹⁰⁸⁾ 즉 일부 채굴집단에 의해 비트코인이 독점되어 있을 경우 블록체인 조작 및 가격 하락을 위해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독일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태도에 한 가상화폐 관련 비즈니스 진입예정 사업자들의 입장은 매우 우호적인데, 즉 규제에 대해 명확하게 정부가 입장을 밝히고 신속하게 대응한 점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각국마다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입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지 상이한 입장을 취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독일의 태도는 상대적으로 분명하고 명확하기 때문이다. 즉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규제상의 지위를 명확하게 밝히고, 금융소비자보호 및 과세상의 취급에 대해 명확히 한 점에서 유럽 내 회원국에서 향후 채택 가능한 모델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독일의 경우 규제를 강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현재 상태에서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가 추가적으로 보완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에서는 독일의 규제접근방법에 대해 실험적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지만 유로위기를 경험한 점, 창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조기에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는 전망되지 않는다.

제4절 미 국

1. 배경 및 특징

비트코인 등의 가상통화에 관한 규제는 미국이 선도하고 있다.¹⁰⁹⁾ 2014년 3월 미국 국세청(IRS)은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는

107) Dan Goodin, Bitcoin Security Guarantee Shattered by Anonymous Miner with 51% Network Power, <http://arstechnica.com/security/2014/06/bitcoin-security-guarantee-shattered-by-anonymous-miner-with-51-network-power>; 이를 “51% 공격”이라고 표현되기도 함.

108) Anita Ramasastry, Bitcoin: If You Can't Ban It Should You Regulate It? The Merits of Legalization, JUSTIA.COM (February, 2014)

109) 한국은행, “분산원장 기술의 현황 및 주요이슈”, 2016, 104면.

비트코인 거래로 생긴 이득에 대해 법정통화는 아니지만 주식이나 채권처럼 자본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결정이다. 미국 국세청이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인정하게 된 이유는 재화를 구입할 때 지불결제수단의 기능을 갖고 있지만 전 세계 어느 한 곳에서도 법정통화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다.¹¹⁰⁾

한편, 정부기관에서 처음으로 가상통화 관련 공식적인 발표를 것으로 FinCEN이 2013년 3월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살펴 볼 수 있다. FinCEN은 이 가이드라인에서 가상화폐의 개념에 대하여 발행국가에서 실물화폐(법정 화폐)를 발행하고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해당 화폐가 법정통화로서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정리하였다.¹¹¹⁾ 또한, 미 연방 정부나 기타 국가의 동전과 지폐로 한정하면서, 이에 반하여 가상통화는 지급결제가 가능하다는 성격상 화폐로서 작동하는 교환 중개 수단일수는 있으나, 실물화폐의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¹¹²⁾ 다만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가상화폐가 실물화폐로 교환가능하고, 대체재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도 밝히고 있다.¹¹³⁾

한편 이 가이드라인을 통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는 가상통화가 개인(소비자)이 물품의 구매나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나, 금융서비스 또는 금융송수신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정부의 일정한 규제의 틀에 적용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용자(User), 관리자(Administrator), 환전자(Exchanger)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였는데, 가상화폐의 이용자는 FinCEN 규정 하의 금융서비스비즈니스(Money Service Business, MSB)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융서비스사업으로 등록, 보고하

110) 맹수석, “가상화폐의 규제 방안 -Bitcoin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활성화에 관한 법제개선 방안 전문가 회의 자료집, 2016. 12. 26, 42쪽.

111) FinCEN, Application of FinCEN’s Regulations to Persons Administering, Exchanging, or Using Virtual Currencies, 2013. 3. 18.

112) FinCEN, Application of FinCEN’s Regulations to Persons Administering, Exchanging, or Using Virtual Currencies, 2013. 3. 18.

113) FinCEN, Application of FinCEN’s Regulations to Persons Administering, Exchanging, or Using Virtual Currencies, 2013. 3. 18.

거나 규정 준수 여부의 기록 등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¹¹⁴⁾ 한편, 관리자와 환전자 그리고 송수신자는 개인 과세에 있어, 공제(exemption)의 법률적 항목에 해당하거나 면세 한도(limitation)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FinCEN의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¹¹⁵⁾

한편, 「통일 화폐 서비스 법(Uniform Money Services Act ; UMSA)」의 정의는 화폐의 개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money transmission’은 ‘지불 수단의 판매 또는 발행, 저장된 금액을 받거나 송금을 위하여 돈 또는 금전적 가치를 받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money’ 또는 ‘currency’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지원(backing)과 광범위한 통용-채택(adoption)을 의미한다. 그 용어는 전통적인 의미의 ‘돈’이 아니고, 교환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가치 단위(가상화폐를 포함)를 포함하는 전통적인 통화 개념을 확장한다.¹¹⁶⁾

2. 규제기관

미국 재무성소속 핀센(FinCEN ;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과 뉴욕 주가 거래소를 위한 라이선스인 ‘비트라이선스’를 최초로 제정하였다.¹¹⁷⁾ 이에 따라 다른 주 정부에서는 핀센과 뉴욕 주의 규제에 준하여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3. 규제내용

(1) 주별 입법 및 판결례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다른 수준의 규제와 입법태도를 보이고 있다. 몇 개 대표적인 주의 예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14) FinCEN, Application of FinCEN’s Regulations to Persons Administering, Exchanging, or Using Virtual Currencies, 2013. 3. 18.

115) FinCEN, Application of FinCEN’s Regulations to Persons Administering, Exchanging, or Using Virtual Currencies, 2013. 3. 18.

116) CSBS, CSBS POLICY ON STATE VIRTUAL CURRENCY REGULATION, 2014. 12. 16.

117) 한국은행, “분산원장 기술의 현황 및 주요이슈”, 2016, 104면.

1) 뉴욕 주

뉴욕(New York)은 2014년부터 가상통화 및 이 사업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뉴욕은 가상통화 사업의 규제 체제를 수립한 첫 번째 주(州)가 되었다.¹¹⁸⁾ 2015년 6월 3일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SDFS)은 뉴욕 주에서 운영하는 가상통화 사업에 대한 감독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¹¹⁹⁾

BitLicense라고도 불리는 이 규정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를 거래하는 기업을 위한 최초의 종합 규제 프레임워크로 평가된다. 이 규정은 가상통화와 관련된 비즈니스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방지 준수 및 사이버보안 지침을 포함한다.¹²⁰⁾ 결과적으로 뉴욕 주에서 가상통화의 전송·저장·구매·판매·교환·발행 또는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뉴욕금융서비스국의 라이선스를 받아야한다. 뉴욕 주 금융서비스국은 2015년 5월 7일 비트코인 거래소인 ‘itBit Trust Company & LLC’에 최초의 가상통화 라이선스를 발급하였다.¹²¹⁾ 그러나 뉴욕 주의 BitLicense는 블록체인 내지 스마트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최근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의 화폐성을 인정한 판례가 등장하여 기존의 가상통화에 대한 화폐성 인정에 대한 변화가 보인다.

2016년 9월 19일 미국 뉴욕주 남부지역 지방법원의 Alison J. Nathan판사의 판결에서 비트코인은 재화와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며, 은행계좌에서 직

118) Edward V. Murphy/M. Maureen Murphy/Michael V. Seitzinger, “Bitcoin: Questions, Answers, and Analysis of Legal Issues”,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Report (October 13, 2015).

119)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Superintendent Benjamin A. Lawskey, “NYSDFS Announces Final Bitlicense Framework for Regulating Digital Currency Firms” speech (June 3, 2015). available at <http://www.dfs.ny.gov/about/speeches/sp1506031.htm>. (Contains a link to 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Tit. 23, Ch. I, Regulations of th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Part 200, Virtual Currencies.)

120) 금융서비스국은 “VIRTUAL CURRENCIES”라는 주제 하에 22개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였다. <http://www.dfs.ny.gov/legal/regulations/adoptions/dfsp200t.pdf>

121)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NYSDFS Announces Approval of First Bitlicense from a Virtual Currency Firm”, press release (September 22, 2015). available at <http://www.dfs.ny.gov/about/press/pr1509221.htm>.

접적으로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전적 자원, 교환수단, 지불수단’이라는 연방법상 화폐와 자금의 정의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것이다.¹²²⁾

이 판결은 비트코인의 화폐성을 부인한 플로리다 주 Teresa Mary Pooler 판사의 판결¹²³⁾과 기존의 FinCEN,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유권해석에 배치되는 판결이다.¹²⁴⁾

2) 플로리다 주

플로리다주는 The State of Florida v. Michell Abner Espinoza¹²⁵⁾의 자금세탁 사건에서 비트코인은 현금처럼 유형적이지 않고, 정부나 은행에 의해 지지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3) 텍사스 주

텍사스 은행 당국(TDB)이 2014년 4월 3일에 모든 가상통화 회사에게 보낸 ‘감독에 관한 각서(SUPERVISORY MEMORANDUM) - 1037’의 내용을 보면, 「텍사스 주 화폐 서비스 법(Money Service Act)」하의 가상통화 규제 방식을 담고 있다.¹²⁶⁾

여기에서는 암호화 화폐(crypto currency)는 화폐 서비스 법(Money Services Act)의 영향을 받는 화폐가 아니므로, 그것을 이용하는 대가로 받는 것은 돈의 송금이 아니라고 하였고, 거래과정에서 주에서 인정하는 화폐의 개입이 없다면, 송금은 이루어 질 수 없다고 하였다.

122) 이 판시의 내용은 ‘United States v. Anthony R. Murgio, S2 15 Cr.769(AJN) (S.D.N.Y. 2015), Memorandum & Order’ 판결의 내용을 소개한 배승욱, “비트코인(Bitcoin)의 화폐성을 인정한 미국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자본시장포커스 2017-02호, 2017. 1. 10, 2쪽을 재인용한 것임.

123) 배승욱, “비트코인(Bitcoin)의 화폐성을 부인한 미국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자본시장WEEKLY, 자본시장연구원, 2016. 8. 16, 1쪽 이하 참조.

124) 배승욱, 위의 글 1쪽.

125) Marco A. Santor, “Florida Court: Bitcoin Isn’t “Money”, and Selling It Isn’t “Transmission””, Client Alert, Pillsbury(August 23, 2016)

<https://www.pillsburylaw.com/images/content/1/0/v2/106361/AlertAugust2016CSFloridaCourtBitcoinIsntMoneyREVISEDFORAPPEAL.pdf> (2017. 8. 19. 최종방문)

126) TEXAS Department of Banking, “Regulatory Treatment of Virtual Currencies Under the Texas Money Services Act”, 2014. 4. 3.

또한, 당사자 간의 주권 통화에 대한 암호화 화폐의 교환/거래는 ‘돈의 전송’이 아니고 이것은 본질적으로 두 당사자 간의 물건의 판매라고 보았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암호화 화폐의 단위를 제공하고, 구매자는 주권 통화로 판매자에게 직접 지불하며, 암호화 화폐 자체를 전송하는 것은 돈의 전송이 아니라고 하였다.

한편, 제3자가 교환원을 통해 주권 통화에 대해 암호 화폐 거래를 일반적으로 진행한 건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파산한 Mt. Gox와 같이 대부분의 Bitcoin 거래 사이트는 제3자에게 보관시키는 형태와 유사한(escrow-like)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송금을 수행하는 암호화 화폐 사업은 금융업법 제151장 및 제7장 텍사스 행정 법 제33장의 적용 가능한 모든 면허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첫째, 가상 화폐 거래를 진행하는 송금인은 인터넷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재정법」 제151.307조의 최소 순자산 요건은 50만 달러이다. 위원장은 제151.307조 (b)항에 규정 된 요소에 따라 필요한 순 자산 가치를 최대 백만 달러까지 인상할 수 있다. 둘째, 면허 소지자는 금융법 151.309항에 따라, 허용된 투자에 대한 가상통화 자산 계산을 포함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재정법 151.203항 (a)(3)에 의거하여, 국장은 자금 송금 과정에서 가상통화로 취급하는 면허(license)신청자가 반드시 관련 컴퓨터 시스템의 보안 감사를 제출해야 한다. 암호화 화폐에 의한 신기술 패러다임은 소비자에게 새로운 위험요소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라이선스 신청자는 신청자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모든 가상통화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¹²⁷⁾

127) TEXAS Department of Banking, “Regulatory Treatment of Virtual Currencies Under the Texas Money Services Act”, 2014. 4. 3.

(2) 통일법위원회의 통일가상통화업규제법

1) 주요 정의규정

2017년 7월 14~20일 제126차 미국 통일법위원회 연례 컨퍼런스가 개최되었고¹²⁸⁾ 이 회의의 주요한 의제 중 하나로 「통일가상통화업규제법(Uniform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y Businesses Act), (이하 ‘통일가상통화법’이라 함)」이 상정되어 7월 19일 최종 통과되었다.¹²⁹⁾

‘통일가상통화법’은 미국 모든 주에서 승인되도록 권장되었다.

이 법 제102조에서 가상통화 관련 당사자 등을 포함한 26개 용어에 대한 상세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02조(8)에서 “법정통화(Legal tender)는 미국정부나 다른 정부가 발행한 동전 또는 화폐를 포함한 교환 또는 가치의 매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제102조(23)에서 “가상 통화(Virtual Currency)는 가치의 디지털 표현 방식으로써 ①교환, 계좌의 단위 또는 가치의 저장 매체로 사용되며, ②법정 통화 여부와 관계없으며, 법정 통화로 지정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가상통화에서 제외되는 것으로는 ①판매자가 친밀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또는 보상 프로그램의 일부로 가맹점에서 법정통화로 가치를 부여하여 사용되는 거래 또는 상인과 거래하거나 교환할 수 없는 금액, ②발행자에 의하여 또는 발행자를 대신하여 발급되고 온라인 게임, 게임 플랫폼 또는 게임 집단 내에서 사용된 가치의 디지털 표현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이 법 제102조(11)에서 “등록자(Registrant)은 가상통화 영업을 이행하기 위한 제210조의 필수 요구사항에 따라 해당 주에 등록한 자”를 의미하고, 제102조(25)에서 제시되고 있는 가상 화폐 영업활동(Virtual currency business activity)의 범위는 ①직접 또는 가상통화통제서비스 공급 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거주자들을 대신하여 가상 통화 운영에 참여하

128) Katherine Cooper, “Uniform Regulation for Virtual Currency Businesses: Coming to a State Near You”, coindesk, Jul 2, 2017.

129) Uniform Law Commission, “Uniform Law Commission Concludes 126th Annual Meeting - Six New Acts Approved”, July 19, 2017.

여 교환, 양도, 또는 저장을 하는 행위, ②타인을 대신하여 전자 귀금속 또는 귀금속의 전자 보증서를 보유하거나, 귀금속에 대한 실제 주식 발행(issuing shares) 또는 전자 증명서 발급, ③ 하나 이상의 온라인 게임, 게임 플랫폼 또는 가상 게임, 법정 통화, 은행 신용장을 위해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디지털 방식을 표현하는 게임 플랫폼 또는 게임의 집단이 해당된다. 이러한 영업활동은 기존의 가치 있는 디지털 표현방식으로 표현된 같은 게 시 자를 대신하거나 제공업체를 대신하여 제공되는 것이다.

2) 사업자에 대한 면허와 등록

중요 규제사항으로는 제201조에서 가상통화업 관련 교환, 이전, 관리 등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면허(license)를 받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취득한 면허는 전환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제202조), 면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상세한 신청자 정보가 요청된다(제203조).

예컨대, 신청자의 이름, 신청자의 현재 또는 제안된 사업장의 주소, 그리고 입주자와의 가상 통화 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가상의 이름 또는 상호가 명시되어야 하며, 신청자의 최고 경영자, 신청자의 각 책임자 및 신청자를 통제하는 자의 법적 이름, 선임의 가명 및 거주지 주소 및 사업장의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신청서를 제출하기 5년 전부터 신청자는 현재와 과거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운영 중인 제품과 서비스, 웹사이트 주소, 소셜 미디어 페이지, 주요 사업장, 사용자와 특정 마케팅 층을 노리는 사업 등에 대한 기술 명세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거주자를 대신하거나 가상 통화 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버를 관리하는 자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및 계약 사본이 요청된다.

그 밖에도 다른 주에서 신청인이 보유한 현금 서비스 또는 송금 면허 및 면허 만료 시점, 그리고 다른 주에서 면허 취득자에 대한 면허 취소, 정지 또는 기타 징계 및 거부된 면허의 신청 사항도 요청된다.

한편, 신청인 대한 재판에 있어서 모든 관할권에서 행사되는 형사 판결, 유예된 기소 합의 및 보류 중인 형사 절차 목록도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제출 전 5년 동안의 회계 원칙에 따라 주요한 자료라고 여겨지는 경우, 모든 관할 구역의 소송, 중재 그리고 행정 절차 목록(신청자가 회계 감사 재무제표, 주주에 대한 보고자료 또는 진술 그리고 보고서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함)과 신청자의 최고경영자 또는 신청자의 책임자가 신청서 제출 전 5년 동안 관련된 모든 관할권에서의 소송, 중재 그리고 신청자 중 채무신청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10년 동안 모든 관할 구역에서 진행되는 파산 또는 법정 관리 된 정보 등 가상통화업을 건전하기 유지하기 위한 각 종 정보가 요청된다.

다만 가상통화업에 대해 제210조(a)에서 연 거래액이 미국 달러 기준 3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를 먼저 취득하지 않고, 등록(registration)으로 가상통화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가상통화업에 대한 신청통지서(notice)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고(제210조(a)(1)), 제208조에 따른 조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제210조(a)(2)). 또한, 다음 회계 분기에 예상되는 가상통화 영업내용을 명시하고 법에 의해 요구되거나 규정에 의해 부서에서 지정한 금액의 등록비(registration fee)를 부서에 지불하여야 한다(제210조(a)(3),(4)).

한편, 통화서비스업(MSB, Money Service Business)으로 FinCEN에 등록해야 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 증빙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한다(제210조(a)(5)).

그 밖에도 신청인이 31 U.S.C.의 은행 비밀 법(Bank Secrecy Act)을 준수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제20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순 자산(net worth)과 예비자금(reserve)을 유지하는 데 동의하며, 사업 감축을 위한 충분한 예비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제210조(a)(6),(7)).

면허 사용자 또는 등록자의 순 자산과 예비자금에 대해서는 제20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206조의 담보에 더하여 면허 소지자와 등록자는 면허 신청 또는 등록 신청

시에 25,000달러의 최소 순자산과 가상통화 영업활동의 예상되는 특징과 크기를 고려할 때 금융당국에서 필요한 규모로 제시한 예비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4. 향후 예상

미국은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각 주별로 가상통화에 대한 다른 입법 태도를 보이는데, 판례도 주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통일된 형태의 규제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 기관에서 통일적인 입법과 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선 주정부는행감독협의회(이하 ‘CSBS’라 함)는 감독과 지급방법을 실험하고 일관성 있는 규제를 위해 CSBS Emerging Payments Task Force를 구성했다. 여기에는 가상 화폐 활동에 대한 평가와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들의 활동을 포함한다.

업계 참가자, 미국 주 및 연방 규제 당국 및 이해 당사자들의 협의를 거쳐 CSBS는 가상 화폐에 관한 전송, 교환, 보유 또는 기타 목적을 포함한 제3자의 통제와 관련된 활동들이 면허와 감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³⁰⁾

각 주는 가상통화로 작성된 법률 및 규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가상통화 서비스 제공자 또는 업체에게 활동 기반 규정을 적용하거나, 기존의 법과 규제를 해석하거나 수정하는 등 기존의 면허 취득 체계에 가상 화폐를 포함시키는 행위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가상 화폐 영업에 기존의 영업 관련 법률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주는 특정한 가상 화폐 활동이 송금인의 라이선스 요구 사항의 요소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130) CSBS, CSBS POLICY ON STATE VIRTUAL CURRENCY REGULATION, 2014. 12. 16.

가상 화폐 활동 규제에 대한 주 정부의 접근 방법을 상이할 수 있지만, CSBS와 회원국은 규제 기관과 대상에 대해 일관성과 명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CSBS와 회원국은 모델 규제 요구사항 및 획일적인 규제 및 법 규정의 초안 작성을 포함하여, 일관성 있고 균일한 규정을 바탕으로 하여 정부의 노력을 지원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¹³¹⁾

제5절 일 본

1. 규제 배경 및 특징

일본은 2014년 약 4억 7,400백만 달러에 달하는 85만개의 비트코인이 손실되는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곡스(Mt.Gox)의 해킹사고 이후 마운트곡스가 파산하게 된 사건이 발생하였다.¹³²⁾ 이후 가상통화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적절한 규제가 없었다는 비판이 일자,¹³³⁾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변경하여 가상화폐 사용자 보호의 관점에서 법제 정비를 시작하였다.¹³⁴⁾

일본 국내법상 비트코인이 통화의 정의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비트코인 거래가 은행법 등 금융관련법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통화단위 및 화폐의 발행 등에 관한 법률’ 및 ‘일본은행법’, ‘민법’의 관련조항을 감안할 때 비트코인은 통화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환전 및 외국무역법’에 의한 외국통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일본정부는 2014년 3월 7일 각의를 거쳐 공표하였다.

131) CSBS, CSBS POLICY ON STATE VIRTUAL CURRENCY REGULATION, 2014. 12. 16.

132) 2014년, 해킹에 따른 대규모 손실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파산에 이른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곡스는 일본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바 있으며, 이에 관련한 재판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13366#csidxe9999a50a08ebf1b55e4d154fc49bda>
이투데이 기사 참조(2017. 7. 14 최종접속)

133) 일본에서는 Mt.Gox 사건을 계기로 가상통화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을 기점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기관 및 규제법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에 이르렀다(福田政之, “ビットコインなど仮想通貨の米国における法規制の動向と日本法への示唆”, 『NBL』 No.1027(2014), 53면). 맹수석, “가상화폐의 규제 방안 -Bitcoin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활성화에 관한 법제개선 방안 전문가 회의 자료집, 2016. 12. 26, 45쪽 재인용.

134) 맹수석, “가상화폐의 규제 방안 -Bitcoin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활성화에 관한 법제개선 방안 전문가 회의 자료집, 2016. 12. 26, 45쪽.

또한, 이 발표에서 비트코인 거래는 은행법 및 금융상품거래법에 의한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2. 규제기관

일본에서 가상화폐에 관해서는 금융청이 감독기능을 갖고 있으며, 「개정 자금결제법」을 통하여 가상화폐교환업자에 대해 장부서류 및 보고서 작성,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 한 보고서 제출, 현장검사 업무개선명령 등의 감독 규정이 마련되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 자금결제법」상 규정을 보면, ① 장부 서류의 작성 보관 의무(제63조의 13), ② 보고서 제출 의무(제63조의 14), ③ 현장 검사 등(제63조의 15), ④ 업무개선명령(제63조의 16), ⑤ 등록취소 등(제63조의 17), ⑥ 등록말소(제63조의 18), ⑦ 감독처분의 공고(제63조의 19), ⑧ 폐지의 신고 등(제63조의 20)이 이에 해당된다.

3. 규제내용

(1) 개정 자금결제법 개관

일본은 2016년 5월 25일 「정보통신기술의 진전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은행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情報通信技術の進展等の環境変化に対応するための銀行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이 성립되었으며, 2017년 4월 1일 시행되었다. 이 법의 개정에는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과 「범죄로 인한 수익의 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의 개정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의 개정을 통하여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 내용을 포함하였다(이하 개정된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 자금결제법’이라 함).¹³⁵⁾

135) <http://www.fsa.go.jp/common/diet/190/01/youkou.pdf> 일본 금융청 홈페이지(2017. 7. 14 최종방문)

특히 「개정 자금결제법」 개정에 사업자로서 가상화폐교환업(가상통화 거래소)의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이용자보호의 관점에서 규칙의 정비도 동시에 진행되었다.¹³⁶⁾

「개정 자금결제법」의 시행을 위하여 2016년 12월 28일에 「가상 화폐교환업체에 대한 내각부령(안) 및 「사무가이드라인(가상화폐교환업체 관련)」(이하 각각 ‘내각부령(안)’, ‘사무가이드라인’이라 함)이 공표되어 등록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구체적인 요건과 등록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내용이 공표되었다.

(2) 등록제도의 도입

「개정 자금결제법」에서 가상화폐교환업은 내각 총리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개정 자금결제법 제63조의 2). 이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상화폐교환업을 한 자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도록 하였다(개정 자금결제법 제107조 제2호, 제5호).

「개정 자금결제법」상 등록의 대상이 되는 ‘가상화폐교환업’이라 함은 “① 가상통화의 매매 또는 다른 가상통화의 교환, ② ①과 관련된 행위의 매개, 중개 또는 대리, ③ ①·②의 행위에 대해 이용자의 금전 또는 가상통화의 관리” 중 하나를 업으로 하는 것(개정 자금결제법 제2조 제7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①의 “가상통화의 매매 또는 다른 가상통화 교환”은 스스로가 이용자(고객)의 상대방이 되어 가상통화의 매매나 교환을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는 것이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가상통화 거래소를 이용하는 거래에서 거래소에 해당하는 역할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136) 影島 広泰, 猿倉 健司, “第1回 資金決済法の改正に伴う「仮想通貨交換業」の規制とは”, BUSINESS LAWYERS, 2017. 3. 17. 참조.

또한 가상통화 송부업무(달러엔 등의 법정 통화로 말하면 송금 업무)를 할 경우에도 가상 통화의 매매를 수반하는 구조를 가진 한 가상화폐 교환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있다고 해석된다.¹³⁷⁾

②의 경우는 이용자의 주문을 가상화폐 교환업자에게 전할 수 있는 행위를 넓게 의미하는 것으로 가상통화거래소에서 이용자의 매도, 매수 주문을 연결시키는 것이나 매도, 매수 주문의 의뢰를 받아 이를 이행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것이다.

③의 경우는 ①, ②의 행위에 관련하여 가상통화거래소와 거래하는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화폐 등의 구입대금, 매각대금을 관리하는 경우가 해당되는 것으로 실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교환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자본을 갖추고 있을 것이 요건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재산적 기반이 없을 경우 등록거부 사유에 해당 「개정 자금결제법」 제63조의 5 제1항 제3호), 이에 대해서는 내각부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각부령(안)에서는 ① 1,000만 엔의 최저 자본금 요건과 ② 순자산 액이 마이너스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내각부령안 제9조).

(3) 등록업자의 행위 규제

「개정 자금결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상화폐교환업자에 대한 행위 규제 관련 내용을 보면, ① 명의 대여의 금지(제63조의 7), ② 정보의 안전한 관리(제63조의 8), ③ 위탁처에 대한 지도 (제63조의 9), ④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조치(이용자의 오인 방지 등을 위한 설명 및 정보 제공 의무)(제63조의 10), ⑤ 이용자 재산의 관리 의무(제63조의 11), ⑥ 지정 가상화폐교환업 분쟁해결 기관과의 계약체결 의무 등 (제63조의 12)이 해당된다.¹³⁸⁾

137) 影島 広泰, 猿倉 健司, 앞의 자료 참조.

138) 가상화폐교환업체는 이 법에 따른 규제 이외에도 「범죄로 인한 수익의 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의 자금세탁 규제 관련하여 특정사업자로서(제2조 제2항 제31호) ① 계좌 개설시 거래 시 확인 의무(제4조), ② 확인 기록·거래기록 등의 작성·보존 의무(제6조, 제7조), ③ 혐의거래 신고 의무(제8조), ④ 내부관리 체제의 정비(직원 교육, 총괄 관리자의 선임 위험 평가서의 작성, 감사 등)(제11조)의 의무를 부과 받고 있다.

(4)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조치

1) 이용자에 대한 설명 및 정보제공

가상화폐와 법정통화의 교환 과정에서 가상화폐교환업체는 이용자에게 거래결정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정 자금결제법」에서는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치로서 가상화폐교환업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설명·정보 제공의무를 부과하였다(개정 자금결제법 제63조의 10).

이용자에 대해 설명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할 사항의 구체적 내용은 내각부령(안) 제16조,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우선 내각부령(안) 제16조제2항에서는 ① 취급하는 가상화폐가 일본의 통화 또는 외국의 통화가 아니라는 것, ② 취급하는 가상화폐가 특정인에게 그 가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취지를, 특정인에 의해 가치를 보장하는 경우 해당자의 성명, 상호 또는 명칭 및 당해 보증 내용, ③ 기타 취급 가상화폐와 본국 통화 또는 외국 통화 오인 방지에 관해 도움이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내각부령(안) 제17조제1항에서는 ① 취급하는 가상화폐의 개요, ② 취급하는 가상화폐 가치의 변동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이유, ③ 그 밖에 해당 거래에 대한 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무가이드라인에서는 II-2-2-1-2 (2) ① (주 1)에서 가상화폐 교환업자가 해당 가상화폐 교환업무에 대해 레버리지 거래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는 제공되는 레버리지 배율에 비례하여 고액의 손실을 입을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해당 레버리지 거래로 인한 위험의 크기 등을 설명하는 것도 적절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주 2)에서는 내각부령(안)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설명하는 사항으로, 전자 기타의 물건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되는 재산적 가치이며,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이전하게 되는 가상화폐의 특성에 따라 사이버 공격에 의한 가상화폐의 소실이나 가치가 감소할 위험이 있는 것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2) 이용자 재산의 관리 의무

가상화폐교환자는 이용자의 금전 또는 가상화폐를 자기의 금전 또는 가상화폐와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 자금결제법 제63조의11 제1항). 구체적인 분별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내각부령(안)에서 가상화폐교환업자가 가상화폐 이용자의 가상화폐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특히 이용자마다 구분하여(당해 이용자의 가상화폐에 관한 각 이용자의 수량이 자기의 장부에 의해 즉시 판별 할 수 있는 상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내각부령(안) 제20조제2항제1호).

4. 향후 예상

2017년 4월 「개정 자금결제법」 시행 이후, 일본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업체들의 등록을 받는 동시에 이용자 보호에 대한 주의사항을 발표하는 등¹³⁹⁾ 다각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금융청에서는 법 시행 이후 9월까지 등록을 마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법 규정에 따라 가상통화거래소의 경우 최소자본금 요건인 1,000만엔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고, 건전성기준에 해당하는 부채비율(자산초과 금지) 유지 요건도 준수하여야 한다.¹⁴⁰⁾

가상통화는 아직 그 형태의 변형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현재상황의 가상통화를 지불수단으로 인정하기로 한 만큼, 입법준비단계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등록승인 또는 거절되는 일본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입법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일본 금융청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상담실 설치 등의 조치는 입법

139) http://www.fsa.go.jp/policy/virtual_currency/06.pdf 일본금융청 홈페이지(2017. 11. 14. 최종방문)

140) http://www.fsa.go.jp/policy/virtual_currency/06.pdf 일본금융청 홈페이지(2017. 11. 14. 최종방문)

적인 대응 외에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상통화 시장에 대해 좋은 대응방법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제6절 소 결

대체로 국제적으로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법정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규제와 분리하여 규제하는 규제기법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관해 적합한 규제방식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예컨대,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화폐관련 파생상품으로 규율하기도 성격상 맞지 않으며, 또한 상품(commodity)으로도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다만 갈수록 암호통화에 대해 규제를 정비 내지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 거래업자에 대한 규제와 유사한 고려방식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즉, 법정통화를 상업적으로 거래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본요건, 자금세탁방지의무, 이용자 보호 등의 규제를 설정하는 것으로 입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대표적인 국제적 규제움직임으로 FATF의 가상통화 규제가이던스를 들 수 있다.

다만 국제적으로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이나 감독체계가 달라, 국가에 따라 규제 방식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관련법에서 가상화폐를 개념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규제체계 안으로 포섭하고 있는 반면, 독일이나 영국 등 유럽 국가에서는 불법적인 거래 형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즉각적인 입법은 차제하고(별도의 감독규제체계 입법 없이) 가상화폐의 진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적으로 기존 법정화폐와 동일한 규제를 취하지 않는 점에는 차이가 없지만, 금융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적이고 사기적인 거래로 사용되는 점을 막고 금융소비자(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식에서 규제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제4장 가상통화 제도화를 위한 법정책적 시사점

1. 가상통화의 개념설정
2. 가상통화 관련 입법 방향

제4장

가상통화 제도화를 위한 법정책적 시사점

1. 가상통화의 개념설정

(1) 가상통화 입법과의 관련성

가상통화의 법적 개념을 설정하는 방향에 따라 규제 기준과 수준이 정해지게 되는 사항으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많은 입법례를 차용한 일본의 입법에서도 「개정 자금결제법」에서 가상통화는 결제수단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지만, 법정통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상통화교환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의 법 정비가 이루어진 것이다.

국제적으로 가상통화는 현재 국가별로 Digital currency(디지털통화), Virtual currency(가상화폐), 암호화폐, 가상통화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가상통화가 기존의 화폐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영란은행 부총재의 연설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¹⁴¹⁾ 이 자료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기존 통화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하이퍼인플레이션(hyperinflation)과 은행시스템이 붕괴되는 상황을 가정하였을 때 현실적으로 가상화폐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전의 예를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새로운 화폐보다는 기존의 통화(예컨대, 미달러화)를 사용한 바가 있다고 하였다.¹⁴²⁾

141) <http://www.bankofengland.co.uk/publications/Documents/speeches/2016/speech886.pdf>

142) 영란은행 부총재(Ben Broadbent)의 연설문 “Central banks and digital currencies (2016. 3), 지급결제 팀장(Ali Robl도)와의 면담(2016. 7)의 내용을 정리한 한국은행 런던사무소, “중앙은행과 디지털 통화”, 현지정보, 2016.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논의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상화폐는 ‘화폐’가 될 수 있는 것인가”에 있을 것이다. 현재 통화제도는 국가가 인정하는 한 가지 통화를 정부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집중적 통화제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화폐’로 볼 수 있는가는 이러한 통화제도 전반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큰 이슈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가상화폐를 대하는 국가별 정책이나 판례의 태도가 일관되지 않은 점도 이러한 논의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또한, 가상통화가 법적 통화와 유사한 신뢰와 거래주체간의 합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급이 자유롭고, 안정적인 변동성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가상통화는 가격변동성이 매우 높고 장기적으로 가치를 저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정부가 지급을 담보하거나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므로 법적 통화와 유사한 지급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오히려 가상화폐 관련 검토의 초점은 가상화폐 자체가 아니라 디지털 통화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이며, 대표적인 분산원장 기술은 비트코인에 사용된 블록체인(Blockchain)이기 때문에 이를 더욱 집중해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¹⁴³⁾

우리나라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범용성과 환급성 등을 기준으로 전자화폐와 선불지급수단을 구분하고 있으나 유럽 등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전자화폐(e-money) 또는 선불카드(stored value facility) 등으로 통칭하여 사용하고 있다.¹⁴⁴⁾ 전자정보를 실체로 한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화폐는 그 범용성, 환급성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¹⁴⁵⁾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범용성이 낮고 환급성이 보장되지 않는데 반해, 전자화폐는 범용성이 높고 환급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구별되나 이러한 차이는 양적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¹⁴⁶⁾

7. 21, 2쪽의 내용을 인용함.

143) 한국은행 현지정보(런던사무소), 중앙은행과 디지털 통화, 2016. 7. 21, 3쪽.

144) 임명환,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과 전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6. 5. 31. 55쪽.

145) 정경영·백명훈, 앞의 보고서, 117쪽.

146) 정경영·백명훈, 앞의 보고서, 117쪽.

이와 같은 현행 우리나라의 법제도 내의 개념에 가상통화는 부합될 수 없다.

최근 우리나라의 가상통화(저자에 따라 가상화폐, 암호통화 등으로 표현하고 있음) 논의를 통해 각자의 연구를 바탕으로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데, 정경영·백명훈의 보고서에서는 가상통화의 용어를 암호통화를 명명하며, 암호통화는 그 재화성에도 불구하고 지급수단을 인정할 수 있어 ‘재화성 지급수단’이라고 정의하였다.¹⁴⁷⁾

이 논의에 따르면 가상통화는 일정부분 가치가 인정되므로 지급수단에는 해당하지만 화폐로 볼 것이 아니고 재화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상통화는 발행기관이 없으며, 범용성과 환금성이 담보되지 않으므로 화폐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금과의 교환이 당초의 금액과 동일한 가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가능한 것이고,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며, 물건이나 서비스의 구입 대가로 ‘지불’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재화로 보는 의견에 동감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투자성을 갖는다는 특징을 어떤 형태로 반영하여 법적인 개념을 설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과제는 미결인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가상통화의 개념설정에 따라서 그 내용을 규율하는 내용을 어느 법에 담을 수 있는지가 결정될 것이고, 만일 현행 법 체계에 부합하는 바가 없는 경우 개별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의 관련 입법방향 부분에서 추가 정리하도록 한다.

(2) 가상통화와 조세

가상통화의 개념과 관련하여 통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세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147) 정경영·백명훈, 앞의 보고서, 121쪽.

이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가상화폐 과세 관련 판례¹⁴⁸⁾를 참고해 볼 수 있는데,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최근의 선결적 판결(preliminary ruling)인 스웨덴 국세청 (Swedish Tax Administration) 대 데이빗 헤드퀴스트(Mr. David Hedquist)의 사건에서 가상화폐(비트코인)의 과세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이다.

이 판례에서 해석을 요청한 법원은 국가 화폐를 비트코인으로 교환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지를 질의한 것이고, EU 소득법제위원회는 외환거래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지만 예외조항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¹⁴⁹⁾

즉, 소득법제위원회는 세금 징수의 어려움으로 인해 금융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EU의 부가가치세 지침 제135조제1항의 목적에 따라 비트코인이 부가가치세 지침 상의 면제가 적용되는 법정통화와 유사하게 사용된다고 간주한 것이다.¹⁵⁰⁾

EU의 부가가치세 지침의 면세범위에는 예금, 당좌계좌, 지급, 이체, 부채, 수수료, 기타 유가증권이 포함되고 있다.

이와 같은 EU의 입장은 일반적으로 유럽 내 국가들의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에 비추어 아직 일관된 입장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설명한 바와 같이 영국의 경우에는 EU 사법재판소의 입장과 유사하게 가상통화(비트코인)의 경우를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으로 정리하고 있으나, 독일의 경우에는 판매세법이나 소득세법으로 과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논의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48) Aneta Vondráčková,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y in the European Union, Charles University in Prague Faculty of Law, 2016 Electronic copy available at: <https://ssrn.com/abstract=2896911>

149) 윤인숙, “유럽연합의 가상화폐 규제 분석”, 이슈페이퍼, 한국법제연구원, 2017. 8, 45쪽.

150) 윤인숙, 위의 보고서, 45쪽.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중략)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략)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다. 내국환·외국환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마. 상호부금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사. 삭제 <2015.2.3>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삭제 <2015.2.3>

나. 삭제 <2015.2.3>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신탁업. 다만,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1)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의 재산(같은 법 제9조제20항의 집합투자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탁받아 운용(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관리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하는 업무. 다만, 같은 법 제103조제1항 제1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 2)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익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받아 운용하는 업무
 - 3)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수탁받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업무
- 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과 이와 관련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의 업무
- 바. 일반사무관리회사업(집합투자기구 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한다)
 사. 투자일임업. 다만,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아. 삭제 <2015.2.3>
- 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의 판매 또는 환매 등 용역을 공급하는 업무(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한다)
- 차. 삭제 <2015.2.3>
- 카. 삭제 <2015.2.3>
- 타. 삭제 <2015.2.3>
- 파. 삭제 <2015.2.3>
- 하. 단기금융업
- 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사업(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로 한정한다)
3. 삭제 <2015.2.3>
 4.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업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업
 7.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11.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채권관리자가 하는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영 및 처분 사업
 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채권관리자가 하는 주택저당채권·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운영 및 처분 사업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영 용역.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4. 삭제 <2015.2.3>
 15.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제공하는 위탁자산 관리·운영 용역
 16. 「농림수산업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같은 법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농식품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영 용역. 다만,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한국은행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
 18. 금전대부업(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이하 생략)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판단에 관한 기존 국세청의 입장은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이 되며,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면세라는 원칙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가상통화의 법적 개념이 정리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원칙적인 기준만 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지만, 향후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 문제의 정리는 반드시 필요한 쟁점사항이다.

가상통화 관련 법인세, 소득세 등 많은 검토사항이 있겠으나, 우선적으로 개념과 관련이 있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사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구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의 영역에 포함을 시켜서 해당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을 것 인가에 대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금융’ 분야에 가상통화도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시행령의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이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업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 금융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규정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2. 가상통화 관련 입법 방향

최근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보면, 국내 가상통화 거래량 급증에 따른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몇 가지 투자 유의사항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①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라는 것, ② 가상통화는 가치급락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하다는 것, ③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다단계 유사코인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것, ④ 가상통화도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 ⑤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안정성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하여 제시한 바 있다.¹⁵¹⁾

15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 6. 23) 참조.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0581&no=25&s_title=&s_kind=title&page=2 (2017. 11. 14. 최종방문)

이 유의사항을 통해 몇 가지 입법상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첫째,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므로 강제 통용성이 없으며, 발행자에 의하여 사용잔액을 환급 받거나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되어야 한다.

둘째, 가상통화는 기존의 법체계로 이해하기에는 매우 곤란한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다. 예컨대, 투자성을 가지고 있어, 가치의 변동이 급격하게 발생하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통의 현금이나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¹⁵²⁾ 또는 전자화폐¹⁵³⁾에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해킹으로부터의 보호기제가 없다. 현재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사고는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 기관에 예치된 예금 등 자산에 대해서는 예금보호제도 등에 따라 일정 수준까지 보호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가상통화에서는 제도적 보호기제가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가상통화는 분산원장 기술 기반이라는 특징으로 보안이 강화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있으나,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따라서는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보유한 시스템의 문제 등으로 해킹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1월 비트코인을 물품으로 보는 전제로, 핀테크업체들이 비트코인을 매개로 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를 외국환거래법 제8조 위반으로 보았다.¹⁵⁴⁾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르면 외환 송금·이체 등의 외국환 업무는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15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①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②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하며, 여기서 전자화폐는 제외된다.

15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5호에서 전자화폐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②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③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일 것, ④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⑤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 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54) 조용탁, “정부 비트코인 정책 엿박자, 금융위는 활성화 기재부는 제동”, 이코노미스트 Focus, 1370호 (2017.01.30.) <http://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15169>

할 수 있고 금융회사가 아닌 곳은 기재부에 등록을 해야 함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해외송금업을 영위한 핀테크 업체는 본 법의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검토와 앞의 외국의 가상통화 규제방향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행 법 기준으로 합법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거래 유형이나 불법자금세탁에 해당하는 거래유형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상통화에 대한 입법방향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입법하는 방식

2017년 가상통화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¹⁵⁵⁾

개정안은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¹⁵⁶⁾(안 제2조제23호 신설), 가상통화취급업을 정의하고 각각의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요건 및 인가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안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 신설). 또한 가상통화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통화거래업자로 하여금 가상통화예치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안 제46조의5 및 제46조의6 신설), 가상통화와 관련하여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거래방식의 제한, 가상통화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안 제46조의7부터 제46조의10까지 신설) 개정의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입법안에 대해서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의 전자금융거래에 가상통화의 영업태가 포함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15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288,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1V7B0P7D3X1I1L4S3R6T0P6Q4S1Q5 <최종방문일 2017. 8. 10>

156) 가상화폐는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전자금융거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로 정의되고 있으며, 여기서의 중요 개념은 ‘전자적 장치를 통한 거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상통화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거래에는 해당하지만 기존의 전자금융과 달리 투자성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예금 등의 경우와 달리 접근될 필요가 있다.

또한, 외환거래(외환송금)의 기능도 포함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수용하기 위해서는 입법의 목적과 대상을 달리 정해야 할 과제가 있다.

(2) 외국환거래법에 입법하는 방식

2017년 1월 17일 「외국환거래법」의 개정으로 소액해외송금에 대한 등록규정이 마련된 바 있다.

이 내용을 보면,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가 외국환업무를 하려는 경우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전등록을 하도록 하는 것(제8조제3항)이며, 해당 업무에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가 제시되어 있다(제8조제3항제2호).

가상통화를 통해 외국환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고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상통화의 영업형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3) 자본시장법에 입법하는 방식

가상통화의 투자성을 기반으로 투자상품의 한 유형으로 분류한다면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입법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으로 6종류의 증권(채무·지분·수익·투자계약·파생결합·증권예탁증권)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들의 특성에 가상통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별적인 투자상품을 신설하여 ‘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는 방식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발행기관의 문제, 거래소의 구분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며, 외환 거래의 부분 등 가상통화의 전 영업영역이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남는다.

(4)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에 입법하는 방식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함)」은 가상통화의 영업개시 등 영업기반에 관한 사항 외에 불법적인 영업 등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현행 ‘유사수신행위법’은 제2조에서 유사수신행위의 정의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조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금지규정을 두고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6조)하고 있다.

엄격하게 판단하면 현재 가상통화로 영업을 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다만, 이 법의 목적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상통화를 하나의 산업분야, 자금조달 방식으로 입법화하려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은 대상법률이라 할 것이다.

(5) 개별 제정법을 마련하는 방식

위의 검토와 같이 현행법상 현재 제시되고 있는 가상통화의 특성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상통화는 기존의 법적인 이해나 개념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이며,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향후 그 형태나 영업방식의 변형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가상통화에 맞춘 개별법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이러한 해결방식은 기존의 법체계를 해치지 않고 새로운 분야의 입법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것이지만, 새로운 분야가 등장할 때마다 현행법을 맞추어 발전시키지 않고 새로이 접근하는 것으로만 해결하려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요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불비에 따른 소비자피해의 방지 등을 위해 개별 제정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 통일법위원회의 ‘통일가산통화업규제법’의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내문헌>

- 맹수석, “가상화폐의 규제 방안 -Bitcoin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활성화에 관한 법제개선 방안 전문가 회의 자료집, 2016. 12. 26,
- 배승욱, “비트코인(Bitcoin)의 화폐성을 인정한 미국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자본시장 포커스 2017-02호, 2017. 1. 10.
- 안수현, 영국의 핀테크관련 법제도와 지원정책: 지급결제산업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49권, 강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안수현, 해외 주요국가의 핀테크 규제동향과 시사점: 미국·영국·핀란드·중국·일본 등의 지급결제시장을 중심으로, 정책연구용역보고서, 국회 입법조사처, 2015. 12.
- 안형도&김종혁,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주요국 운용사례와 제도 도입 방안, 정책연구 05-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12. 30.
- 윤인숙, “유럽연합의 가상화폐 규제 분석”, 이슈페이퍼, 한국법제연구원, 2017. 8.
- 이정훈·김두원, 가상화폐 관련 형사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28권 제2호 (통권 제110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여름.
- 임명환,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과 전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6. 5. 31.
- 정경영·백명훈, “디지털사회 법제연구(II)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 관련 법제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2017. 8. 31.
- 조용탁, “정부 비트코인 정책 엇박자, 금융위는 활성화 기재부는 제동”, 이코노미스트 Focus, 2017.01.30.
- “자금결제법 개정안과 가상통화(디지털통화) 이용현황”, 주간금융브리프 제25권 29호, 2016. 7. 23.

천창민, “ICO(Initial Coin Offering)의 증권법적 평가와 함의”, 자본시장포커스, 자본시장
연구원, 2017. 9. 5.

한국은행 런던사무소, “중앙은행과 디지털 통화”, 현지정보, 2016. 7. 21.

한국은행, “분산원장 기술의 현황 및 주요이슈”, 2016.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7. 4. 14

<외국문헌>

Anita Ramasastry, Bitcoin: If You Can't Ban It Should You Regulate It? The Merits
of Legalization, JUSTIA.COM, February, 2014.

Barbara Wollsey, Germany's Central Bank Advises Against Bitcoin, Handelsblat Global,
9. May 2017.

BaFin, Trading in Bitcoins, 17 June 2014.

Bitcoin24 lässt wieder Abhebungen zu, Heise Online, 2013. 5. 3 k-lenz. de/bit14

Carl-Ludwig Thiele, Zahlungsverkehr und Wertpapierabwicklung-Herausforderungen aus
Sicht der Bundesbank, Payments Symposium 2017. 5. 18.

CSBS, CSBS POLICY ON STATE VIRTUAL CURRENCY REGULATION, 2014. 12. 16.

Dont't Buy Bitcoin! Says German Central Bank, May 10, 2017.

Dan Cummings, FCA Testing Blockchain Technology in Pilot Program, Feb 17, 2017.

Directive 2005/6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October 2005
on the prevention of the use of the financial system for the purpose of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Consolidated version January 4, 2011,

EBA, EBA warns consumers on virtual currencies, 13 December 2013.

Edward V. Murphy/M. Maureen Murphy/Michael V. Seitzinger, “Bitcoin: Questions,
Answers, and Analysis of Legal Issues”,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 Report, October 13, 2015.

- Fischer, in: Beckseher Kurzkommentar, Strafgesetzbuch und Negengesetze, 57th Edition 2010, § 261 para 5 and 6
- FinCEN, Application of FinCEN's Regulations to Persons Administering, Exchanging, or Using Virtual Currencies, 2013. 3. 18.
- Government Chief Scientific Advisor, Fin Tech Futures, The UK as a World Leader in Financial Technologies,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 2015.
- Germany Plans Tax on Bitcoin After Virtual Currency Recognised as Private Money, THE TELEGRAPH (Aug. 19, 2013, 112) Dan Goodin, Bitcoin Security Guarantee Shattered by Anonymous Miner with 51% Network Power,
- George Osborne hopes to turn Britain into bitcoin capital, 6 August 2014.
- HM Treasury, Laying of Regulations to implement the new E-Money Directive- a consultation document, October 2010.
- HM Treasury, Money Laundering Regulations 2017: Consultation, 26 June 2017
- HM Revenue & Customs, Policy Paper-Revenue and Customs Brief9(2014): Bitcoin and other Cryptocurrencies, published 3 March 2014.
- Jens Münzer, Bitcoins: Aufsichtliche Bewertung und Risiken für Nutzer, BaFinJournal, BaFin, 2013. 12. 19.
- Kevin Helms, BaFin Cease and Desist Orders to Ban Onecoin Activities in Germany, May 1. 2017
- Katherine Cooper, "Uniform Regulation for Virtual Currency Businesses: Coming to a State Near You", coindesk, Jul 2, 2017.
- Marco A. Santor, "Florida Court: Bitcoin Isn't "Money", and Selling It Isn't "Transmission"", Client Alert, Pillsbury(August 23, 2016)
-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NYSDFS Announces Approval of First Bitlicense from a Virtual Currency Firm", press release, September 22, 2015.
- Robert Courtneidge/Charlie Clarence-Smith, Bitcoin and Blockchain Technology Update: Reserch Paper, Locke Lord (UK) LLP, Feb. 2017.

Schwark, in: Schwark/Zimmer, Kapitalmarktrechtskommentar(2010), §35 WpHG para.11
Bumke, Relative Rechtswidrigkeit, 2004.

Seth Litwack, BitCoin: Currency or Fool's Gol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egal
Classification of Bitcoin, Temple Int'L & Comp. L.J. 29.2.

SEC, SEC Issues Investigative Report Concluding DAO Tokens, a Digital Asset, Were
Securities, Press Release.

Tanja Aschenbeck-Florange, Regulation of Bitcoin in Germany: First comprehensive
Statement on Bitcoins by German Federal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BaFin), Feb 5, 2014.

The Evolution of Third Party Payment Providers and Cryptocurrencies under the EU's
Upcoming PSD2 and AMLD4, Swift Institute Working Paper No. 2015-001,23
September 2015.

TECHINASIA, Hong Kong Company Raises \$185m in record-breaking initial coin
offering, July 2, 2017.

Uniform Law Commission, "Uniform Law Commission Concludes 126th Annual Meeting
- Six New Acts Approved", July 19, 2017.

UK. Takes Novel Approach on FinTech, Wall Street Journal, 11 April 2016;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Consultation Paper: 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 2016.

TEXAS Department of Banking, "Regulatory Treatment of Virtual Currencies Under the
Texas Money Services Act", 2014. 4. 3.

TEXAS Department of Banking, "Regulatory Treatment of Virtual Currencies Under the
Texas Money Services Act", 2014. 4. 3.

Katherine Cooper, "Uniform Regulation for Virtual Currency Businesses: Coming to a
State Near You", coindesk, Jul 2, 2017.

Uniform Law Commission, "Uniform Law Commission Concludes 126th Annual Meeting
- Six New Acts Approved", July 19, 2017.

- CSBS, CSBS POLICY ON STATE VIRTUAL CURRENCY REGULATION, 2014. 12. 16.
- Aneta Vondráčková,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y in the European Union, Charles University in Prague Faculty of Law, 2016 Electronic copy available
- 影島 広泰, 猿倉 健司, “第1回 資金決済法の改正に伴う「仮想通貨交換業」の規制とは”, BUSINESS LAWYERS, 2017. 3. 17.
- 福田政之, “ビットコインなど仮想通貨の米国における法規制の動向と日本法への示唆”, 「NBL」 No.1027, 2014.

<인터넷 자료>

- <https://sites.temple.edu/ticlj/files/2017/02/29.2.Litwack-TICLJ.pdf#search=%27bitcoin++bafin+banking+act%27>
- <http://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15169>
- https://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1542
- <https://www.cryptocoinsnews.com/eus-top-court-rules-bitcoin-currency-trades-exempt-vat/>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13683#csidxc398896f6be611b8b1d014d9e84a89b>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13683#csidxc398896f6be611b8b1d014d9e84a89b>
- <http://naver.me/FFkqoJcV>
- https://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1542
- https://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1542
- <http://m.etoday.co.kr/view.php?idxno=1511309&ref=https%3A%2F%2Fwww.google.com%2F#cb>
- <http://m.etoday.co.kr/view.php?idxno=1511309&ref=https%3A%2F%2Fwww.google.com%2F#cb>
- <http://m.fss.or.kr:8000/fss/board/bodoBoardDetail.do?seqNo=18952&page=2&mId=M01050201000000&gubun=01>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0418&no=18&s_title=&s_kind=title&page=1

<https://www.fca.org.uk/firms/fintech-and-innovative-businesses>

http://www.meti.go.jp/committee/kenkyukai/sansei/fintech/pdf/006_02_00.pdf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4/aug/06/george-osborne-britain-bitcoin-capital>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money-laundering-regulations-2017/money-laundering-regulations-2017>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evenue-and-customs-brief-9-2014-bitcoin-and-other-cryptocurrencies/revenue-and-customs-brief-9-2014-bitcoin-and-other-cryptocurrencies>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17-131>

<https://www.techinasia.com/hong-kong-company-raises-185m-recordbreaking-initial-coin-offering>

<https://sites.temple.edu/ticlj/files/2017/02/29.2.Litwack-TICLJ.pdf#search=%27bitcoin++bafin+banking+act%27>

<http://www.newsbtc.com/2017/05/10/germany-central-bank-bitcoin-purchase/>

https://www.bundesbank.de/Redaktion/EN/Termine/2017/2017_05_18_payments_symposium_2017.html

<https://bitcoinmagazine.com/articles/regulation-bitcoins-germany-first-comprehensive-statement-bitcoins-german-federal-financial-supervisory-authority-bafin-1391637959/>

<https://www.winheller.com/en/banking-finance-and-insurance-law/bitcoin-trading/bitcoin-and-bafin.html>

<https://news.bitcoin.com/bafin-issues-cease-and-desist-orders-to-ban-onecoin-activities-in-germany/>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7/may/15/digital-gold-why-hackers-love-bitcoin-ransomware>

<http://www.e-d-w.de/en/index.html>

<http://www.telegraph.co.uk/finance/globalbusiness/10252383/Germany-plans-tax-on-bitcoin-after-virtual-currency-recognised-as-privatemoney.html>

<http://arstechnica.com/security/2014/06/bitcoin-security-guarantee-shattered-by-anonymous-miner-with-51-network-power>

<http://www.dfs.ny.gov/about/speeches/sp1506031.htm>.

<http://www.dfs.ny.gov/legal/regulations/adoptions/dfsp200t.pdf>
available at <http://www.dfs.ny.gov/about/press/pr1509221.htm>.

<https://www.pillsburylaw.com/images/content/1/0/v2/106361/AlertAugust2016CSFloridaCourtBitcoinIsntMoneyREVISEDFORAPPEAL.pdf>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13366#csidxe9999a50a08ebf1b55e4d154fc49bda> <http://www.fsa.go.jp/common/diet/190/01/youkou.pdf>

http://www.fsa.go.jp/policy/virtual_currency/06.pdf

<http://www.bankofengland.co.uk/publications/Documents/speeches/2016/speech886.pdf>

<https://ssrn.com/abstract=2896911>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0581&no=25&s_title=&s_kind=title&page=2

<http://jmagazine.joins.com/economist/view/315169>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1V7B0P7D3X1I1L4S3R6T0P6Q4S1Q5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7-18-④

디지털사회 법제연구(I)
- 가상통화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

2017년 8월 29일 印刷

2017년 8월 31일 發行

發行人 이 익 현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전 화 : (044)861-0300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값 7,000원

1.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978-89-6684-768-6 93360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